

## ③ 인감증명제도

### I. 인감과 인감증명

#### 1. 인 감

- 인감이라 함은 대조를 통해 그 眞否를 확인하기 위하여 미리 행정청 또는 은행·거래처 등에 신고·등록 등의 절차에 의하여 제출해 두는 인영을 말하며, 인감증명법에 의하여 관할 주소지 증명청에 미리 신고한 인영뿐만 아니라, 예금통장에 찍어둔 인영, 거래처에 지정하여 미리 제출해 둔 인영 등도 인감에 포함된다.
- 개인의 인감은 인감증명법에 근거하여 행정기관인 증명청에서 사무를 관장하며 법인인감은 상업등기규칙(대법원 규칙 2129호)에 의거 대법원(각 등기소)에서 사무를 관장한다.

#### 2. 인감증명

- 인감증명이란 인감신고인이 증명청을 방문하여 증명을 신청하는 인영이 현재 행정청에 미리 신고한 인영과 동일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말하며, 인감증명법에 의한 개인의 인감증명과 상업등기규칙에 의한 법인의 인감증명으로 구분할 수 있다.
- 이러한 인감증명은 부동산 거래나 공정증서 작성시에 본인의 의사확인을 위하여 첨부서류로 주로 사용되고 있다.

## 2. 우리나라의 인감제도

### 1. 개 요

- 우리나라의 인감제도는 일제시대인 1914년 인감증명규칙 시행으로 처음 국내에 도입되었고, 1961년 인감증명법 제정으로 정착되었으며, 그 동안 11차례 걸친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 이러한 인감제도는 공증제도가 보편화되지 못한 우리나라의 현실적인 여건으로 인하여 비용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고 절차가 간소하다는 점에서 부동산 거래나 보증 등 사경제 영역에서 폭 넓게 활용되고 있다.

### 2. 연 혁

#### 가. 인감증명법

구 분	내 용
<b>제정</b> '61.9.23 법률 제724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청이 출원자의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인감을 증명함으로써 국민편의 도모</li> <li>▪ 증명청, 인감신고, 인감대장, 인감의 제한, 본인신고의 원칙, 증명원 제출, 직권말소 및 개인신고, 대장의 보존기간 등 규정</li> </ul>
<b>1차 개정</b> '62.12.12 법률 제1216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감신고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인감신고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인감의 직권말소 범위를 확대하여 부정인감의 사용을 방지(사망·실종 신고, 개인요구 불응시)</li> <li>▪ 시장·구청장의 권한을 동장에게 위임</li> </ul>
<b>2차 개정</b> '77.12.31 법률 제3040호 ('78.1.1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감대장을 개인별주민등록표와 통합 관리('78.9.1 시행)</li> <li>▪ 인감대장의 기록내용을 판독할 수 없거나 서식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감의 재신고 요구 가능</li> <li>▪ 미성년자의 인감신고시 법정대리인 동의</li> <li>▪ 주민등록 말소 및 재등록시 신고된 인감도 말소 또는 재신고 한 것으로 봄</li> </ul>

구 분	내 용
<b>3차 개정</b> '91.1.14 법률 제4315호 ('91.3.1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등록 전산화 추진으로 인감대장을 주민등록과 분리</li> <li>■ 인감을 새로 신고하도록 하고 기존 인감은 효력 상실</li> </ul>
<b>4차 개정</b> '92.12.8 법률 제4522호 ('93.4.1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입국관리법이 전문개정됨에 따라 관계조문을 정비</li> </ul>
<b>5차 개정</b> '94.12.22 법률 제4796호 ('95.1.1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에 따른 행정특례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관련사항 정비</li> </ul>
<b>6차 개정</b> '96.12.30 법률 제5203호 ('97.4.1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감의 대리신고시 보증인의 거주범위를 전국으로 확대</li> <li>■ 한정치산자와 금치산자도 인감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함</li> </ul>
<b>7차 개정</b> '97.12.17 법률 제5460호 ('98.12.1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카드제도 도입을 위하여 개정되는 주민등록법에 맞추어 인감을 주민카드에 수록</li> <li>■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에 관한 사무를 수행</li> <li>■ 주민등록 말소 및 재등록시 신고된 인감도 말소 또는 재신고한 것으로 봄('98.4.1시행)</li> </ul>
<b>8차 개정</b> '99.1.21 법률 제5649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감대리신고시 보증인을 2인 이상에서 1인으로 함</li> </ul>
<b>9차 개정</b> '99.5.24 법률 제5897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등록법 제17조의8 규정에 의한 인감의 주민카드 수록 폐지(인감증명법 제3조제4항)</li> <li>* 주민등록법개정법을 부칙에 의한 개정</li> </ul>
<b>10차 개정</b> '02.3.25 법률 제6667호 ('03.3.26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의 신고 명의, 인감관련 서류 이송, 인감의 이종신고여부 확인, 인감증명 발급 절차 규정</li> <li>■ 전국의 읍·면·동에서 온라인으로 인감증명서 발급</li> <li>■ 인감을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는 경우와 제출서류 규정</li> <li>■ 주소변경신고(전입)와 동시에 증명발급 가능</li> </ul>

구 분	내 용
<p>11차 개정 '04.10.16 법률 제7231호 (’05.1.17 시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이 인감증명에 관한 사무를 관장</li> <li>■ 인감증명 발급을 시·군·구청에서도 발급</li> <li>■ 인감증명 발급사실을 수요처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인감증명발급사실확인시스템을 구축·운영</li> <li>■ 인감을 신고한 자가 말소신고를 하지 않고 국외이주를 한 경우에는 그 출국한 날에, 현지이민의 경우에는 재외국민으로 신분을 정리한 날에 재외국민 인감을 신고한 것으로 간주</li> <li>■ 말소신고된 인감을 본인이 부활신청을 하는 경우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함</li> </ul>

## 나. 인감증명법 시행령

구 분	내 용
<b>제정</b> '62.6.12 각령 제800호 ('62.7.13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감신고, 인감대장, 인감증명절차 및 증명거부 대상을 정함</li> <li>▪ 인감증명에 필요한 서식을 정함</li> </ul>
<b>1차 개정</b> '63.2.5 각령 제1185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감의 직권말소 절차를 정함</li> <li>▪ 인감신고 서식을 새로 정함</li> </ul>
<b>2차 개정</b> '65.5.18 대통령령 제2137호 ('65.7.19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부산의 구청장은 인감증명 사무의 전부를, 기타 시장·구청장은 권한의 일부를 출장소장, 동·리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li> </ul>
<b>3차 개정</b> '69.6.16 대통령령 제3959호 ('69.8.16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감신고시 구두신고제를 채택</li> <li>▪ 증명의 유효기간을 단축 (6월 → 3월)</li> </ul>
<b>4차 개정</b> '70.2.26 대통령령 제4672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을 한글화 함</li> </ul>
<b>5차 개정</b> '72.10.30 대통령령 제6370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등록 퇴거신고를 인감의 주소변경신고로 보도록 함</li> <li>▪ 외국인인 거류신고증으로 본인여부를 확인</li> </ul>
<b>6차 개정</b> '78.4.6 대통령령 제8919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국인의 인감사무를 시·구의 경우 동장에게 위임</li> <li>▪ 인감업무와 관련된 신고·신청서의 성명은 호적 또는 주민등록상의 성명에 의하도록 함</li> <li>▪ 서식을 정비하고 증명의 “사용용도” 란을 신설</li> </ul>
<b>7차 개정</b> '79.2.1 대통령령 제9302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증명의 유효기간을 변경 (3월 → 부동산매도용 1월, 기타 3월)</li> </ul>
<b>8차 개정</b> '82.5.29 대통령령 제10829호 ('82.6.14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감증명 발급시 수령자의 무인을 받도록 함</li> <li>▪ 재외국민 및 국외이주신고자가 부동산의 권리를 이전할 때에는 증명청의 관할 세무서장을 거치도록 함</li> </ul>

구 분	내 용
<p><b>9차 개정</b> '83.4.25 대통령령 제11118호 ( '83.5.11 시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 신청시에는 매수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함</li> </ul>
<p><b>10차 개정</b> '85.6.29 대통령령 제11715호 ( '85.7.1 시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감증명 발급시 수령자의 날인제도를 개선(무인 → 본인은 인감 날인, 대리인은 무인 날인)</li> </ul>
<p><b>11차 개정</b> '91.4.16 대통령령 제13351호 ( '91.7.1 시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별주민등록표에서 인감이 분리됨에 따라 인감대장의 서식을 새로 정함</li> <li>▪ 인장 크기의 최저한도를 정함(가로 · 세로 7mm이상)</li> <li>▪ 인감대장에 사진을 붙일 수 있도록 함</li> <li>▪ 인감대장서식의 변경에 따른 재신고 기간을 둠('91.7.1 ~ 12.31)</li> </ul>
<p><b>12차 개정</b> '93.12.28 대통령령 제14032호 ( '94.1.1 시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으로 인감신고 및 증명 발급</li> <li>▪ 주민등록법에 의한 국외이주신고를 한 때에는 증명청은 인감대장을 재외국민용인감대장으로 관리</li> <li>▪ 인감의 서면신고시 보증인의 거주범위를 동의 경우 동일 시·구까지 확대</li> <li>▪ 증명신청시 재외국민에 한하여 재외공관 확인을 받도록 함</li> <li>▪ 부동산매도용을 제외하고 증명의 용도지정 제도를 폐지하되, 필요시 신청인이 직접 기재하여 사용</li> <li>▪ 증명의 유효기간을 폐지하고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 동의서의 유효기간을 6월로 확대</li> <li>▪ 인감의 신고 및 증명서 발급시 본인의 의사에 의한 것인가에 대한 확인규정을 삭제</li> </ul>
<p><b>13차 개정</b> '97.4.12 대통령령 제15341호 ( '97.4.12 시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치산자 · 한정치산자의 인감신고 방법과 인감증명 신청절차를 신설</li> <li>▪ 인감색인대장, 인감대장수령부 및 인감대장이송부를 통합하여 인감관리대장으로 하는 등 서식 정비('97.5.1부터 시행)</li> <li>▪ 대리로 개인신고할 경우에 증명발급 유예기간 5일을 폐지</li> <li>▪ 인감관련 각종 신고사항 중 전출신고, 복귀신고, 신거주지 변경신고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폐지</li> <li>▪ 증명발급시 수령인 서명 · 날인 또는 서명 · 무인을 받도록 함</li> </ul>

구 분	내 용
<p><b>14차 개정</b> '99.3.12 대통령령 제16177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감증명에 사용하는 인장은 원형·타원형 또는 4각형이나 이에 준하는 것으로 해야 한다는 인장의 모형제한규정을 폐지</li> </ul>
<p><b>15차 개정</b> '02.12.31 대통령령 제17867호 (*03.3.26 시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가 인감을 신고할 때의 명의와 국내거소이전시의 인감관련 서류 이송, 인감의 이중신고여부 확인, 인감증명 발급 등의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국내거소신고자용 인감대장(5호)을 신설</li> <li>■ 전국의 읍·면·동에서 온라인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재외국민 등의 인감증명신청의 특례조항(제14조)을 폐지</li> <li>■ 인감으로 신고하는 인장의 규격을 가로·세로 각각 7mm이상 30mm이내로 조정</li> <li>■ 인감서면신고시 보증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던 사항을 폐지하고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읍·면·동장이 직접 확인하도록 하였으며, 인감을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는 경우 및 그 제출서류를 규정</li> <li>■ 주소변경(전입) 신고시 인감관련서류가 도착되어야 발급이 가능하던 사항을 전산처리와 동시에 발급이 가능하도록 함</li> <li>■ 인감증명 관련 수수료를 규정(자동발급 → 통당 500원, 타동발급 → 통당 800원, 인감변경신고→회당 500원)</li> <li>■ 인감신고·증명발급시 제출하는 신분증에 장애인등록증을 추가</li> <li>■ 인감보호신청에 대한 해제란 신설</li> <li>■ 재외국민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시 소관 증명청 소재지 또는 부동산소재지 관할 세무서장 확인을 선택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함</li> <li>■ 사망한 경우 이외에는 말소된 인감의 부활신고를 하면 최초 작성한 인감대장을 계속 사용하도록 함</li> <li>■ 인감관련 서류의 열람에 관한 구체적 절차 마련</li> <li>■ 인감증명서 용지를 복사방지를 위한 특수용지로 사용</li> <li>■ 인감담당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제도(보험, 공제 등) 도입</li> </ul>
<p><b>16차 개정</b> '03.9.29 대통령령 제18105호 (*03.10.1 시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고한 인감에 대하여 보호(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전국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 처리</li> <li>■ 재외국민, 해외체류자(다만, 해외체류자는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가 인감의 보호(해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신청 가능</li> <li>■ 인감을 신고(변경)하거나 증명 발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본인은 서명 또는 무인을, 대리인의 경우에는 무인으로 확인</li> </ul>

구 분	내 용
<p style="text-align: center;"><b>17차 개정</b> '05.1.15 대통령령 제18681호 ( '05.1.17 시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감제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신분증 중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장애인등록증은 제외</li> <li>■ 인감의 신고(변경신고)를 하거나 증명 발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신분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인감신고인의 무인을 주민등록전산자료와 전자적 방법으로 대조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함</li> <li>■ 인감보호(해제)신청을 전국 시·군·구청에서도 접수 처리할 수 있도록 함</li> <li>■ 인감증명을 대리발급한 증명청은 그 사실에 대하여 우편, 휴대폰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본인에게 통보하여 줄 수 있도록 함</li> <li>■ 인감증명을 발급 받거나 인감변경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통당 600원, 회당 600원으로 인감수수료를 전국 동일하게 적용</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18차 개정</b> '07.12.31 대통령령 제20503호 ( '08.1.1 시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호적법 폐지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라 관련사항을 정비</li> <li>■ 인감대장 및 관련공부의 이송은 등기우편으로 하되, 시·군·자치구 관내의 인감대장 및 관련공부에 대한 이송방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별도로 규정하여 운영하도록 함</li> <li>■ 인감보호 및 해제신청을 재외국민, 해외거주(체류)자 외에 복역자도 가능하도록 하고, 인감보호 및 해제신청에 대한 인감대장의 신고사항 기록을 인감대장 관리 증명청으로 일원화</li> <li>■ 인감증명 수수료 면제대상 확대</li> </ul>

### 3. 인감증명의 용도 및 유효기간 변천

연월일	유효기간	용도
1914. 7	제한 없음	구분 없음
1962. 6. 12	6월	”
1969. 6. 16	3월	”
1978. 4. 6	3월	용도란 신설
1979. 2. 1	부동산매도용 1월 기타 3월	용도 구분 (부동산매도용, 기타)
1983. 4. 25	”	용도란에 “부동산매수자 인적사항 기재 신설”
1993. 12. 28	제한 없음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개별 법령에서 규정)	용도구분 폐지 (부동산매도용에 한해 매수자 인적 사항 기재, 필요한 경우 신청인이 직접 기재 사용)

## Ⅱ . 인감증명법의 개요

### 1. 법의 목적 (법 제1조)

- 인감증명법은 행정청이 출원자의 현재 신고 되어 있는 인감을 증명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행정청이 발급하는 인감 증명서는 출원자의 현재 신고 되어 있는 인감을 증명하는 것이며, 개인간의 거래에 필요한 ‘본인 의사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것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 즉, 사인간의 계약에 있어 첨부된 인감증명서는 그 계약서에 날인된 거래당사자의 인감이 증명청에 신고 되어 있는 인감과 동일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에 불과하며, 그 계약이 거래 당사자의 진실된 의사에 의해 유효하게 성립하였는가 하는 법률적 문제와는 별개로 보아야 한다.

### 2. 사무관장기관 (법 제2조, 영 제18조의2)

- 인감증명법령에 의한 인감사무의 관장기관은 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은 제외)·군수·자치구의 구청장으로 한다.(법 제2조),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5항)
-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권한의 위임을 받은 주소지 관할 읍장·면장·동장 또는 출장소장이 대한민국에 주소를 가진 자와 재외국민 또는 재외국민으로서 국내거소신고를 한 자의 인감사무를 처리하고, 체류지 관할 시장·자치구청장 또는 읍장·면장이 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의 인감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법 제14조의2, 영 제18조의2)

《 인감의 증명청 》

- 내국인(재외국민 포함) : 읍 · 면 · 동장 또는 출장소장
- 외국인 : 시장, 자치구청장, 읍 · 면장
- 국내거소신고자
  - 재외국민 : 읍 · 면 · 동장 또는 출장소장
  - 외국국적동포 : 시장, 자치구청장, 읍 · 면장

### Ⅲ. 인감의 신고

#### 1. 신고자격 (영 제3조)

- 인감의 신고자격 요건을 충족한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은 누구나 주소지 관할 증명청이나 체류지 관할 증명청에 미리 인감을 신고하고, 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다.

##### 《 인감의 신고자격 요건 》

- 국내에 주소를 가진 국민 : 주민등록
- 재외국민 : 가족관계등록
- 외국인 : 외국인등록
- 국내거소신고자 :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

#### 2. 신고기관 (법 제3조, 영 제3조)

- 인감의 신고기관, 즉 소관 증명청은 국내에 주소를 가진 국민, 재외국민, 외국인, 국내거소신고자 등 신고자격에 따라 다음과 같다.

##### 《 인감의 신고기관 》

- 국내에 주소를 가진 국민 : 주민등록지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
- 재외국민
  - 주민등록법 시행 후('68.8.29 이후) 출국자 : 최종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
  - 주민등록법 시행 전('68.8.28 이전) 출국자 : 국내 주소를 상실하고 국외로 출국하기 직전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장
  - 국내의 최종주소지가 불분명한 자 : 등록기준지 관할 읍·면·동

- 출장소장
- ※ 등록기준지 증명청에 등록하는 자는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지 아니한 자에 한한다. 이후 최종주소지가 나타나는 경우 인감대장 등 관련 공부를 관할 증명청으로 이송하고, 이를 이송 받은 소관 증명청은 「증명청 변경」으로 인감대장을 전산으로 처리한 후 원본 인감대장에 관련사항을 정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외국인
  - 체류지 관할 시장, 자치구청장, 읍·면장
- 국내거소신고자(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재외국민·외국국적동포)
  -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 : 국내거소지 관할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
  - 국내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 : 국내거소지 관할 시장, 자치구청장, 읍·면장

## Ⅰ 참고 Ⅰ 재외국민, 외국인, 국내거소신고자

### □ 재외국민

- 인감증명법상 「재외국민」이라 함은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대한민국에 현재하지 아니한 자로서 대한민국 내에 주소를 가지지 아니한 국민”을 의미함.
  - 따라서 단기 해외취업·관광목적의 출국자나 외항선원 등과 같이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일시적으로 출국한 자는 재외국민이 아니며, 국외이주 후 이주국가의 영주권(장기체류 허가증)을 소지한 채 현재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 하더라도 영구 귀국신고를 하지 않는 한 재외국민의 신분으로 보아야 한다.
- 주민등록을 국내에 두고 일시적으로 출국하여 현지에서 상대방 국가의 영주

권(장기체류 허가증)을 획득한 자의 주민등록이 “현지이민자”로 정리된 때에도 「재외국민」으로 본다.

- 결혼·귀화 등으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우리나라의 국적을 상실하였다면 국내법인 인감증명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내국인으로 인감증명을 발급할 수 없다.
  - 다만, 본인이 국내에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하 ‘재외동포법’<sup>1)</sup>)이라 한다.)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하여 미리 체류지 및 거소지 관할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한 경우에는 인감증명 발급이 가능하다.
- 재외국민등록법상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90일 이상 해외에 거주 또는 체류할 목적으로 체류하는 자는 재외공관에 이를 등록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제2조 참조)에 의거, 영주권자가 아닌 내국인인 경우에도 재외공관에 등록하여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재외국민의 신분 확인시에는 반드시 거주여권(PR여권) 등을 확인하여 ‘재외국민’에 해당하는지 확인토록 한다.

#### 〈재외동포법상 재외국민의 정의〉

- 재외동포법상 재외국민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함.(재외동포법 시행령 제2조)
- ①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라 함은 거주국으로부터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거주목적의 장기체류자격을 취득한 자
- ②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라 함은 해외이주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자로 거주국으로부터 영주권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

1) 재외동포법과 출입국관리법과의 관계 : 재외동포법은 출입국관리법의 특별법으로서 출입국관리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며, 동 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출입국관리법이 적용된다.

## □ 외국인 등록 및 체류지 변경신고

-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게 되는 경우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함.
  - 다만, 주한외국공관(대사관과 영사관을 포함한다)과 국제기구의 직원 및 그의 가족, 대한민국정부와의 협정에 의하여 외교관 또는 영사와 유사한 특권 및 면제를 누리는 자와 그의 가족, 대한민국정부가 초청한 자 등으로서 법무부령이 정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함.(출입국관리법 제31조)
- 외국인등록을 받은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등록외국인기록표를 작성·비치하고, 외국인등록표를 작성하여 그 외국인이 체류하는 시(특별·광역시 제외)·군 또는 구(자치구)의 장에게 송부하고, 이를 송부받은 시·군 또는 구의 장은 그 등록사항을 외국인등록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함.
  - 등록을 한 외국인이 체류지를 변경한 때에는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체류지의 시·군·구의 장 또는 신체류지를 관할하는 사무소장·출장소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함.(출입국관리법 제34조, 제36조)

## □ 국내거소신고 자격 및 절차

-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는 재외동포법을 적용받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한민국 안에 거소를 정하여 그 거소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이하 “출장소장”)에게 국내거소신고를 할 수 있음.(재외동포법 제6조)
  - 국내거소신고를 받은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국내거소신고원부 2부를 작성, 1부는 자체 비치하고, 1부는 “원본대조필”인을 우측하단에 날인하여 외국인등록표 송부절차에 따라 시·군·구의 장에게 송부(체류61530-527, '99.12.1)
- 신고한 국내거소를 이전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가 소재한

시·군·구의 장이나 신거소를 관할하는 사무소장·출장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거소이전 신고를 받은 사무소장이나 출장소장은 신거소가 소재한 시·군·구의 장에게, 시·군·구의 장은 신거소를 관할하는 사무소장이나 출장소장에게 각각 이를 통보하여야 함.(재외동포법 시행령 제11조)

- 국내거소이전신고를 받은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국내거소이전신고서 사본 2부를 작성, 1부는 지체 없이 전 거소 관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송부하고, 1부는 전거소지 시·군·구의 장에게 송부(재외동포업무처리요령, '02.4.)

- 재외동포가 국내거소신고증을 지닐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무소장이나 출장소장에게 국내거소신고증을 반납하여야 함.(재외동포법 시행령 제14조)

#### 〈재외동포법상 외국국적동포의 정의〉

○ 외국국적동포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다음의 자를 말함.(재외동포법 시행령 제3조)

- ①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 ②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 Ⅰ 참고 Ⅰ 이중국적자의 인감신고

-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국적을 가진 이중국적자는 국적을 선택하기 이전에는 국민처우 신청에 대한 처리결과에 따라 인감신고자로서의 신분도 유동적임. (법무부고시 제2007-898호 이중국적자업무처리지침 참조)
- 즉, 대한민국 국민으로 처우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 후 내국인으로, 외국인으로 처우되는 경우에는 외국인등록 후 외국인 또는 국내거소신고자로 인감신

고를 하여야 함.

## I 참고 I 국적상실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 우리나라 국민이 자진하여 상대방 국가의 ‘시민권 취득’등의 사유로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97조)에 의거 본인이 재외공관이나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적상실 여부의 확인은 1차적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의거 가능하다.
- 그러나 가족관계등록 신고에 의한 국적 상실(취득, 회복)의 기재는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하여 상당한 기일이 경과된 후 정리된다는 점에서,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국적 상실의 법적 효력여부를 판가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신분에 관하여 정확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적법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법무부장관이 발행하는 ‘국적상실 확인증명서’를 제출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 3. 신고방법 (법 제7조, 영 제7조 및 제8조)

### 가. 방문신고

- 인감을 신고하려는 자가 관할 증명청을 직접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등[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주소,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장애인등록증은 제외)]을 신고하려는 인장과 제출한 후,
  - 내국인의 경우에는 주소 · 성명 · 주민등록번호를,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여권번호 · 최종주소지나 등록기준지를,
  -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내체류지와 외국인등록번호를,
  - 국내거소신고자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지와 국내거소신고번호 및 여권번호를 구술로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이때 신고인은 위임발급의 가능 여부, 그 위임을 받을 수 있는 자를 한정하거나(예를 들면 自洞 신청의 경우에는 누구에게나, 他洞 신청의 경우에는 ‘처’ ‘큰아들 ○○’에게만 발급 허용 등), 위임을 받을 수 있는 경우(예를 들면 본인이 해외출국 할 경우에는 ‘처’, ‘남동생 ○○○’이외의 경우에는 발급 제한, 병원입원의 경우에는 ‘처’이외에는 발급불가 등)를 지정하는 등 본인의 인감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인감대장에 기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또한 인감보호 신청 사항을 해제하도록 신청할 수도 있다.
  - 이 때 유의사항으로는 인감의 보호신청시 ‘관계’만을 기재하는 것은 지양하고,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괄호 안에 병기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 나. 서면신고

- 인감을 신고하려는 자가 증명청을 직접 방문하여 신고할 수 없는 때에는 서면으로 인감을 신고할 수 있다.
  - 다만,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는 경우는 질병 · 출산 · 징집 · 복역 · 유학 · 해외거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방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며, 그 사유의 입증에 가능한 증거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 인감의 서면신고는 대리인이 증명청을 방문하여 인감(변경)신고서[별지 제9호 서식]를 작성 · 제출하여 신고하되 서면신고를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입증서류와 인감이 신고 되어 있는 성년자 1인의 보증인 연서와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 이때 증명청은 보증인의 인감이 신고 되어 있는 인감인지의 여부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확인한 후, 인감대장의 해당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대리인으로 하여금 신고사항을 확인하게 한 후, 그의 무인을 받아야 한다. 단, 보증인은 대리인과 동일하지 않아야 하며, 성년자의 인감신고시에는 법정대리인<sup>2)</sup> 동의를 필요 없으므로 ‘공란’으로 둔다.

### 〈인감 서면신고 사유를 증명하는 입증자료 예시〉

- 질병 : 의사진단서, 질병 명이 뚜렷하지 않은 희귀한 병 등으로 인하여 요양원이나 기도원(소)에서 요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요양원 · 기도원의 장이 발행하는 입원(수용)치료 중인 확인서, 정식인가가 나지 않은 합숙소 등에 묶고 있는 경우에는 거동이 불능하다는 운영자의 확인서, 고령자의 노환으로 증명청 방문이 불가능한 경우 통리장 확인서나 와병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인근 주민(가족도 무방함) 2인 이상의 확인서, 정신질환이나 장애인(거동불능) 관련시설 기관장의 보호확인서 등
- 출산 : 출산으로 인해 현재 보호되고 있으며, 거동이 불편한 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
- 징집 : 훈련병입소확인원, 현역복무확인서
- 복역 : 수감증명서, 보호시설수용확인서, 감호소수용확인서 등
- 유학 · 해외거주 : 재외공관 경유(영사관 확인)

#### ○ 서면신고에 따른 보증인 책임의 성격

- 서면신고서에는 인감이 신고 되어 있는 성년자 1인의 보증이 있어야 하며, 재외국민, 외국인 및 국내거소신고자도 인감이 신고 되어 있으면 보증인 자격이 있다.
- 인감증명법 제7조제2항에서 말하는 “보증”의 의미는 「인감을 신고하는 자와 인감신고서의 신고명의인이 동일인이라는 것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확인함」을 뜻하는 것으로 민법상의 채무에 관한 포괄적인 보증제도인 연대보증 · 재정보증과는 다르다.

2) 법정대리인 : 본인의 선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에 의해 대리권이 수여된 자로서 친권자와 후견인으로 구분된다.

- 친권자 : 미성년자의 부 또는 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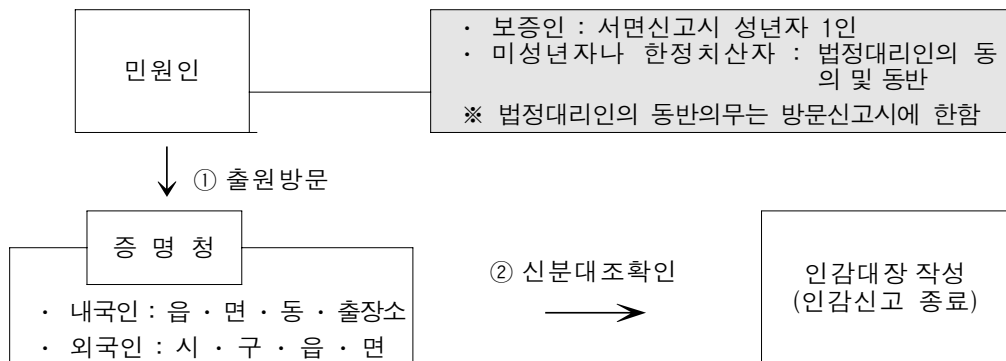
- 후견인 :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을 때 또는 친권자가 법률행위를 대리하거나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 1인을 선임

- 다만, 서면신고로 인감증명을 발급받아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허위로 보증을 하여 타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과 처벌이 가능하다.

○ 신고서류

- 서면신고서(별지 제9호서식)
- 인감으로 신고하려는 인장(단, 별도의 인감지를 붙이는 경우에는 생략)
- 입증서류(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원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사본을 한 후 되돌려 주어도 가능)

<인감신고 절차>



다.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의 인감신고

-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는 법정대리인과 함께 방문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명청은 인감대장의 비고란에 “구술신고”라고 기재한 후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가 아닌 법정대리인의 무인을 받도록 한다.
- 서면으로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성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성년자 1인의 보증인이 있어야 하며, 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라는 점에서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법정대리인이나 보

증인의 인감이 신고된 인감인지 여부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이를 증명청이 확인하여야 한다.

- 미성년자의 인감신고시 법정대리인이 친권자인 경우에는 부 또는 모 중 어느 1인의 동의만 있으면 되고, 인감증명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 인감의 신고 또는 증명발급 신청은 각각의 법률행위로서 미성년자 단독으로서는 불가하다.

#### **라. 금치산자의 인감신고**

- 금치산자가 인감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정대리인이 직접 신고하여야 한다. 나머지 절차는 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절차와 같다.

#### **마. 금치산자 · 한정치산자 통보 및 관리방법**

-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은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치산 또는 금치산 신고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거 신고 사항을 14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읍 · 면 · 동 · 출장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 주소지 읍 · 면 · 동 · 출장소에서는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이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해 통보한 한정치산 · 금치산 신고의 내용이 기록된 명부를 편철하여 관리하고, 인감을 새로 신고하려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이를 열람하여 해당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 통보받은 대상자가 인감이 신고된 자인 경우에는 인감대장 제2쪽의 인감의 특징란에 그 사유와 접수일자를 법정대리인의 성명 · 주소 ·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기록하여 관리한다.
- 동 주민센터의 경우 원본이 송부되지 않을 때에는 원본의 사본을 시 · 구청으로부터 FAX 등으로 송부받아 이를 관리하도록 한다.

## IV. 신고의 수리

### 1. 신고수리시 유의사항 (영 제7조)

#### 가. 방문신고의 경우

- 주민등록증 등을 제출 받아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에 본인이 보는 앞에서 인감대장의 해당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인감보호(해제)를 위하여 신청할 사항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인감대장의 해당란에 인감을 날인한 후 본인의 무인을 받아야 하며,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와 함께 방문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무인을 받아야 한다.
  - 다만, 제출받은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인감신고인의 무인을 주민등록 전산자료와 전자적 방법으로 대조하여 확인 할 수 있다.

#### 《 방문신고시 유의사항 》

- 인감도장의 성명은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성명과 일치해야 하며, 임의 성명이나 성명대신 문자나 부호, 그림 등으로 조각된 것을 수리해서는 안됨.
- 종전에 인감으로 신고하였던 인장을 다시 인감으로 신고할 경우에도 변경신고 수리
-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의 인감신고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 철저
- 재외국민,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자가 최종주소지에서 인감신고를 받은 경우 등록기준지에 대한 신고사항 통보(조회) 철저
- 인감대장의 기재사항은 정확하고 명확하게 정자로 기입
- 증명청의 담당자는 인감보호신청제도 안내

- 문자전송(SMS) 방식에 의한 인감증명 대리발급사실 통보서비스 안내(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시·군·구의 경우)

《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

- 국내에 주소를 가진 국민 :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 재외국민 : 여권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기재 사항 확인을 위해 여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국내거소신고자(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 국내거소신고증(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과 여권
  - ※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장애인등록증은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없음.

《 여권 등 신분증의 「유효성」 판단 기준 》

- 「여권」의 경우
  - 내국인의 여권은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므로(여권법 제13조제1항제1호) 기간 연장이나 재발급을 받지 않으면 효력이 없음.
  - 외국정부가 발행한 여권 유효기간 경과시 효력 상실 여부를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효력 상실이 국제적 다수 통례임.
- 「주민등록증」의 경우
  - 주민등록증의 경우 주민등록법('99.5.24 개정) 부칙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의해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된 신분증과 동법 시행령 제40조에 의해 회수하여 파기처리 해야 하는 신분증은 유효한 신분증이 아님에 유의
- 「운전면허증」의 경우
  - 운전면허증의 유효성에 대한 판단은 소관기관인 경찰청의 유권해석에 의거 판단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적성검사기간이 경과된 신분증은 민원인이 경찰서, 지구대 등을 방문하여 발급받은 확인서 등을 통하여 신분 확인

## 나. 서면신고의 경우

- 증명청은 서면신고서에 날인된 보증인의 인감이 소관 증명청에 신고된 인감과 동일한지를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확인하고 방문신고의 방법에 따라 신고인의 신분을 확인하여야 한다.

### 《 서면신고시 유의사항 》

- 대리인이 가지고 온 인감 또는 신고서에 날인된 인영이 보존용 인감(인감지에 날인된 인영)과 일치하는지 여부
- 신고인이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가 규정에 맞게 작성되고, 날인된 법정대리인의 인영이 신고된 인감과 일치 여부
- 신고내용이 주민등록사항과 일치하는지 등

## 2. 재외국민과 국내거소신고자의 인감신고여부 확인(영 제9조)

### 가. 확인방법

- 재외국민이나 국내거소신고자의 인감신고를 받은 증명청은 전산정보처리조직(구인감키 활용)에 의하여 인감을 신고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이때 인감을 신고한 사실이 있는 재외국민이나 국내거소신고자가 인감을 신고할 경우에는 최종주소지나 현재류지에 출원한 경우에는 구술신고로, 국내거소지 증명청에 직접 출원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 으로 말소신고서를 제출받아 이를 최종주소지나 현재류지에 원본을 송부토록 한다.
  - ※ 긴급하게 민원을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fax전송 등의 방법 활용
- 국내거소지 증명청은 [별지 제12호서식] 의 사본을 보관하여 말소신고에 대한 근거를 확보하고 이를 받은 최종주소지나 현재류지에서는 즉시 당해 인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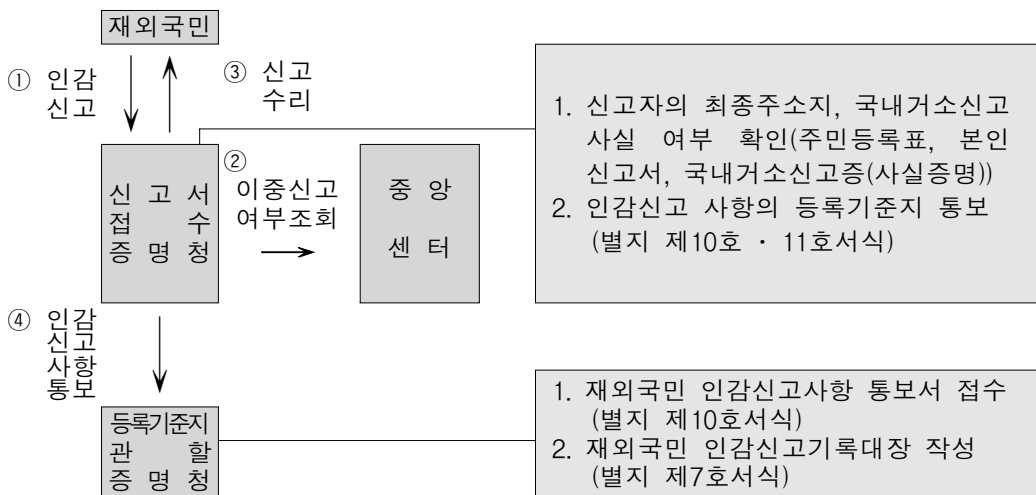
을 말소한다.

※ 이때 과거신고된 인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인감의 특징란에 ‘거소신고자로 재외국민인감 발급 중지’로 전산입력토록 하여 사후 발급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

## 나. 인감신고사항 통보

- 인감신고를 받은 증명청은 인감신고사항을 [별지 제10호·제11호서식]에 의하여 등록기준지, 최종주소지 또는 현재류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 재외국민의 인감신고 사항을 통보 받은 등록기준지 관할 증명청(읍·면·동)에서는 재외국민 인감신고기록대장 [별지 제7호서식]을 작성·관리한다.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재외국민 인감신고기록대장의 여권번호란에 여권번호와 함께 국내거소신고번호를 ( )표시하여 병기하고 인감신고사항란의 정리내용란에 국내거소신고사항에 대한 내용을 기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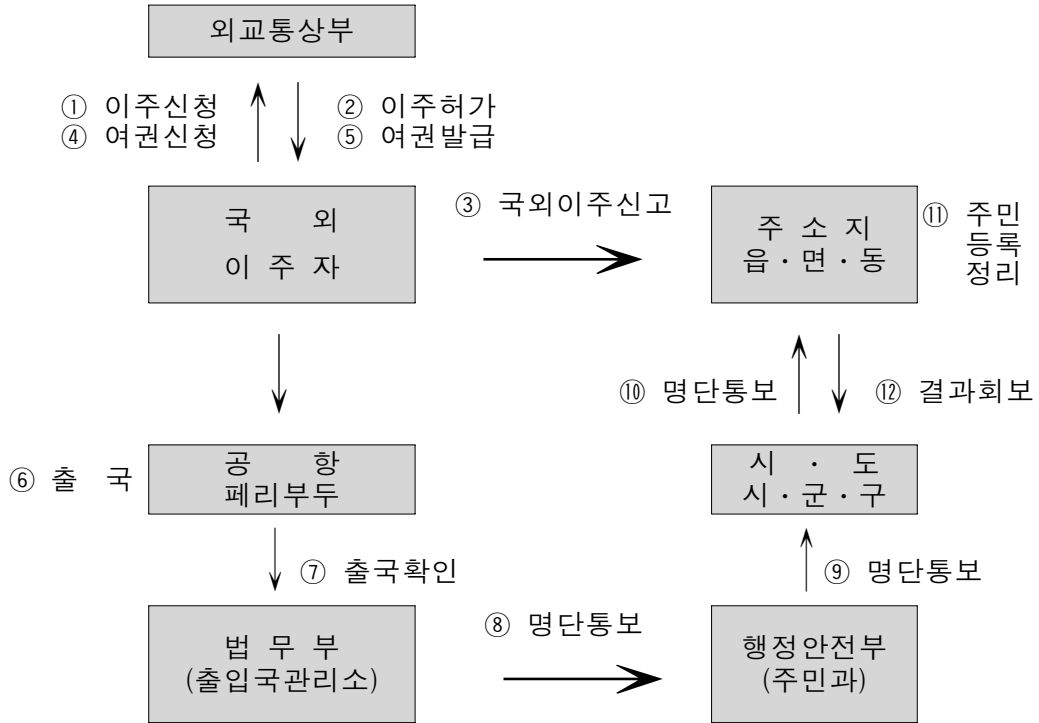
### <재외국민의 인감신고 절차>



### 3. 국외이주신고에 따른 재외국민 인감신고 처리방법 (법 제3조제5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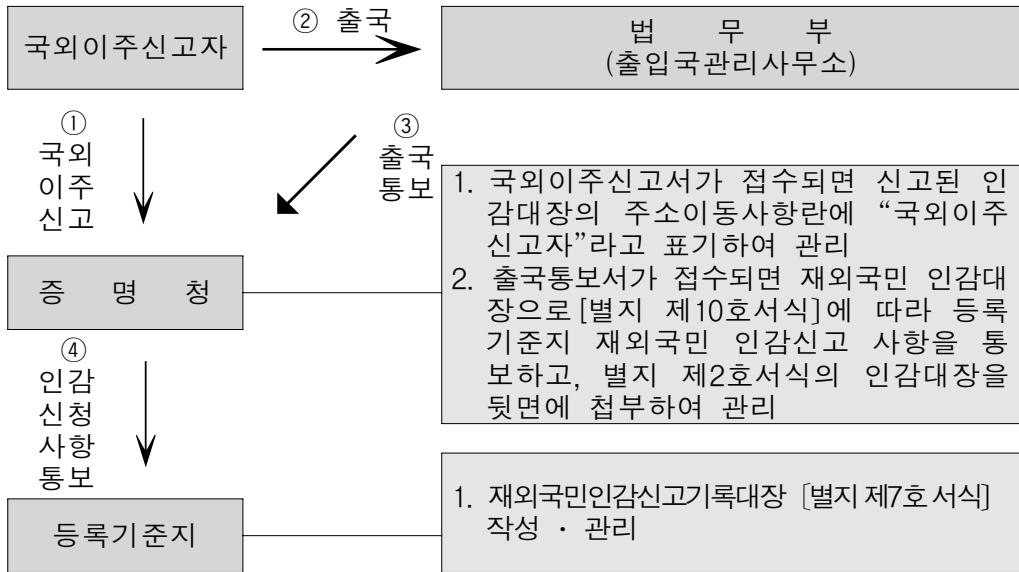
- 인감을 신고한 자가 주민등록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이주신고를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인감대장의 주소이동사항란에 그 일자를 기재하고, “국외이주신고”라고 표기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그에 따라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해 국외이주 및 현지이민출국자 명단을 통보받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재외국민 인감대장을 작성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인감대장을 첨부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이때 국외이주신고자가 출국한 날을 재외국민 인감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 재외국민 인감대장 제2쪽 인감의 특징란에 재외국민 인감신고일자(출국일자), 출국자명단통보서 접수일자(필요시 주민등록표 참조)를 기재하여 정리한다.
- 재외국민 인감을 관리하는 증명청은 인감신고 사항을 등록기준지에 통보하고, 등록기준지에서는 재외국민 인감신고기록대장 [별지 제7호서식]을 작성하여 기록·관리 한다.

### 〈국외이주신고 절차〉



※ 외교통상부의 허가 없이 국외이주를 하는 경우도 있음.

### 〈국외이주신고자의 인감대장 관리절차〉



## 4. 재외국민의 최종주소지를 알 수 없는 경우 인감신고

- 주민등록번호(13자리)를 부여 받은 후 수회에 걸쳐 전출입이 일어났으나, 최종 전출 내역만 확인되고 전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동원하여 최종주소지를 확인 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래도 최종주소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최종전출지 또는 주민등록이 된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명청에서 재외국민의 인감을 등록하도록 한다.
- 최종전출지에 인감이 등록된 재외국민의 최종주소지가 사후에 확인된 경우에는 관련 공부를 신속하게 최종주소지 증명청에 이관 조치하고, 이를 우송받은 최종주소지 증명청은 증명청을 변경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5. 신고수리의 거부 (영 제10조)

### 가. 신고수리의 거부요건

- 증명청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인감의 신고수리를 거부하여야 한다.
  - 인장이 동판 · 고무 기타 인영이 변하기 쉬운 물질로 제조된 때
  - 영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표 등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성명으로 신고한 때
  - 인장이 영 제6조에서 정한 규격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 인감의 증명에 사용하는 인장의 크기는 가로 · 세로 각각 7mm이상, 30mm 이내이어야 함.(영 제6조 '02.12.31 개정)
  - 금치산자 본인이 직접 인감을 신고한 때
  -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인감을 신고한 때
  - 기 신고된 인감이 있을 때. 다만, 본인이 인감변경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변경 신고로 본다.
  - 인장의 마멸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인감화일에 수록하기에 부적합한 때
  - 인감 신고인의 신분 확인이 곤란한 때

### 나. 가족관계등록부와 상이한 성명의 인감신고

- 인감증명법에 의한 각종 신고 및 신청은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영 제3조), 인장의 성명이 한자로 조각되어 있다면 가족관계등록부나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의 한자와 동일하여야 하므로 한자가 다른 인장의 인감신고 수리는 불가하다.
- 다만,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표의 성명에 의한 인장표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예외를 둘 수 있다.(예: 성은 전수 기재되어야 하나 이름은 축약형 등

의 사용)

- 인감으로 신고하고자 하는 인장의 성명은 누구라도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성명으로 제조 되어야 한다.
- 또한, 이미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표의 성명(한자)과 상이한 인감이 등록되고 증명이 발급되어 졌다면 발급절차에 하자가 없는 한 인감증명서로서의 효력은 부인할 수 없으나, 증명청에서는 법의 취지에 맞도록 당사자에게 인감을 변경하도록 행정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한편, 인장에 주민등록표의 성명이외에 관행적으로 사용하는“印·章·信”등을 조각한 경우는 인장문화의 오랜 전통과 관습을 인정하여 수리토록 하고, 통상적으로 성명란의 인식을 저해하는 범위의 일반적 글자 또는 문양, 그림의 조각은 수리 할 수 없다.

## V. 인감의 보호 및 해제신청

### 1. 인감의 보호신청 (영 제7조의2)

- 인감을 신고하거나 이미 신고한 자가 자신의 인감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군·구, 읍·면·동 및 출장소를 방문하여 신분증(주민등록증 등)을 제출한 후 필요한 사항을 인감대장에 기재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 이 경우 시·군·구, 읍·면·동 및 출장소는 인감의 보호신청사항을 인감대장 제2쪽의 「인감의 보호신청」란에 기재하여 신청인이 본인(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인 경우에는 기재내용을 확인하도록 한 후 서명 또는 무인을 받고, 대리인인 경우에는 무인을 받는다. 그런 다음 담당자 성명을 기재한 후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야 한다.
- 이때 인감의 보호신청을 하기 위해 인감대장을 관리하는 증명청을 방문하여 구술로 신청하거나, 인감대장을 관리하는 증명청이 아닌 곳에 인감보호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의2서식] 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대리신청은 할 수 없다.
- 다만, 영 제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재외국민, 해외거주(체류)자 또는 복역자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인감의 보호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감보호신청서 [별지 제8호의2서식] 에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확인 또는 수감기관의 확인을 받아 인감증명발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감증명발급기관은 주민등록증 등에 의하여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하여야 한다.
- 인감의 보호신청서는 접수받은 증명청에서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그 사본을 인감대장 관리기관에 우송(등기)하여야 한다.
- 인감보호신청의 효력
  - 신고한 인감에 대한 보호신청은 인감변경신고를 하였다고 하여 그 효력이

자동적으로 상실되는 것이 아니라 인감의 보호를 신청한 것에 대한 해제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는 한, 신고한 인감에 대한 보호신청은 계속 유효하며, 이는 증명청에 어떤 「특정의 인감」을 지정하여 인감보호를 신청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고한 인감」에 대하여 보호를 신청한 것이기 때문이다.

## 2. 인감의 보호신청사항 통보

- 인감의 보호 신청을 받은 인감증명발급기관은 지체없이 인감보호신청사항 통보서[별지 제8호의3서식]에 의하여 인감대장을 관리하는 증명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인감대장을 관리하는 증명청은 그 사항을 인감대장에 기재 정리한 후 담당공무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3. 인감보호의 해제신청

- 인감보호신청자가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및 출장소를 방문하여 해제신청을 하는 때에는 인감보호신청 절차를 준용하여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 4. 외국인(시민권자)의 대리 인감보호신청

- 시민권자가 출국한 상태로서 대리인에 의한 인감보호(해제)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선 [별지 제8호의2서식] 을 전부 기재한 후 본국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다음, 본국 공증인의 자격여부에 대하여 관할 대한민국 영사관의 확인을 받아 인감보호신청서를 증명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이때 [별지 8호의2서식] 에 공증한 내용이 영문 등이므로 한글번역문을 받드

시 첨부하여야 한다.

- 또한, 증명청 등에 비치되어 있는 [별지 제8호의2서식] 을 팩스 전송 등을 통하여 당해 외국인 본인의 무인을 날인을 받아, 다시 제출 받은 후, 증명청의 담당자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외국인의 대리 인감보호신청을 수리하여야 한다.
- 이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대한 보완적 의미의 특례로서 지침으로 운영하기 바람.

## VI. 인감대장의 작성

### 1. 인감대장의 종류

- 인감의 신고를 받은 증명청에서는 인감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인감대장의 서식은 국내에 주소를 가진 내국인용 [별지 제2호서식]과 재외국민용 [별지 제3호서식] 및 외국인용 [별지 제4호서식], 국내거소신고자용 [별지 제5호서식]으로 구별되어 있으므로 각각의 신분상태에 맞도록 이를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서식의 기재란이 부족할 때에는 동일한 서식의 부표를 첨부하고 당해 증명청의 직인으로 간인하여 사용한다.

### 2. 국내에 주소를 가진 국민 (영 제5조, 별지 제2호서식)

#### 가. 신고자 인적사항 (서식 1쪽)

- 제1쪽에는 인감신고자의 인적사항, 인감, 주소이동사항 및 작성에 따른 유의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 인감신고가 있으면 신고인의 성명(한글·한자), 주민등록번호를 주민등록사항의 내용과 신고인이 소지한 증명서로 확인한 후 흑색필기구로 정확히 기재하되, 「인감」란은 증명 발급시 사용하기 위한 난이므로 빈란으로 둔다.
- 「주소이동사항」은 최초인감신고 당시 증명청으로의 전입주소부터 기재하되 주민등록의 전입(변경)사항과 일치하도록 ‘주민등록사무처리요령’에 따라 주소, 전입(변경)연월일을 인감업무담당자가 기재하고 날인한다.
- 인감대장의 기재 및 관리방법
  1. 인감대장은 인감신고자의 생년월일 순으로 관리한다.
    - ※ 인감대장의 보관 및 용이한 식별을 위하여 색테이프를 부착하여 관리

2. 주소이동사항란의 주소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소 및 주소변경사항과 직권조치사항 등을 기재하여야 하고, 전입란에는 그 전입(변경)일자를 기재한 후 인감담당자가 날인한다.  
 ※ 주민등록 직권말소에 의한 인감대장의 정리는 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주소이동사항’란에는 주민등록 직권조치 사항을, 제2쪽의 비고란에는 영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인감의 직권말소 날짜, 사유와 ‘직권말소’라고 표기한 후 담당자 날인 또는 서명
3. 인감의 특징란에는 성명변경,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 변경신고 사항에 대한 내용을 알기 쉽게 기재하여 관리하고,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를 기재하여 관리한다.
4. 인감의 보호(해제) 신청란에는 인감의 보호(해제)신청 사항을 기재 · 관리한다.
5. 검정색 펜으로 기재하여 청결히 관리한다.

**〈국내에 주소를 가진 자의 인감대장 작성방법〉**

주민등록번호	3 9 0 0 0 0 - 1 4 5 0 0 0 0	인 감 대 장			
성명 (한자)	홍길동 (弘吉東)		인감		
순서	주소	(통/반)	전 입		
1	경남 창원군 내서읍 내덕리 257번지		1999.3.12 (전입)	(인)	
2	창원군조례에 의거 리동명칭 변경 (2000.10.20)		. .	(인)	
3	경남 창원군 내서읍 내하리 257번지		2000.10.20 (명칭변경)	(인)	
4	법률 제4678호로 시설치 (2001.1.1)		. .	(인)	
5	경남 창원시 명서동 257번지	4/5	2001.1.1 (행정구역변경)		
6	부산 강서구 명지동 명지 APT 3동 1205호	12/5	2001.5.20	(인)	
7			. .		
8			. .		
9			. .		
10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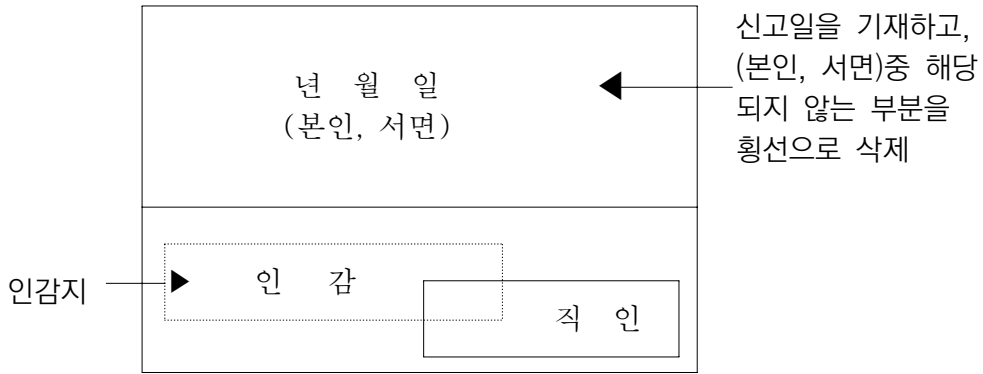
## 나. 인감신고사항 (서식 2쪽)

- 제2쪽의 인감신고란은 인감(본인 · 서면신고), 인감의 특징, 인감의 보호신청, 인감보호 해제신청, 비고 · 담당자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본인 방문신고의 경우
  - 인감신고란에는 인감의 신고연월일을 기재하며, (본인, 서면) 중 해당되지 않는 부분을 횡선(==)으로 삭제하고 신고인이 인감으로 신고하고자 하는 입장을 인감란에 선명하게 날인한다.
  - 인감대장의 작성이 끝나면 신고인으로 하여금 관계사항을 확인토록 한 뒤 인감의 비고란에 본인(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무인을 받는다.
  - 미성년자가 인감신고를 하는 경우
    - 증명청은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이혼으로 인한 친권자가 지정되어 있는지를 우선 확인한 다음, 친권자가 지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친권자 지정사항을 인감대장 제2쪽의 인감의 특징란에 기재하여 차후 인감의 변경 · 말소신청 · 증명발급 등 인감관련 업무수행에 기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기재 예시) '03.4.6부모이혼, 친권자 “홍길순:470216-2927111, 관계:모”로 지정-담당자 홍길동 날인
    - 친권자가 미지정되어 있는 경우, 인감대장 제2쪽의 인감의 특징란에 친권자 미지정 사항과 가족관계등록부 확인일을 기재하여 각종 신고 및 발급에 대한 적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참고적으로 친권자가 미지정 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와 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공동으로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될 수 있다.  
기재 예시) '03.4.6부모이혼, 친권자 미지정(가족관계확인일'03.8.9) “부 홍길동:470216-1927112, 모 고춘자:500808-2453910”가 신고- 담

### 당자 홍길동 날인

- 이후 인감관련 업무수행시 친권자 지정(변경)여부를 확인 후 처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는 친권자 지정이 된 부 또는 모가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권한행사를 하기 때문이다.
  - 인감변경신고, 인감의 말소신청 및 부활의 경우
    - ○○년 ○월 ○일 “신고말소”, “신고부활”등 정리일자와 그 사유를 기재한 후 비고란에 본인(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무인을 받는다. 그런 다음 인감담당공무원이 서명 · 날인한다.
  - 주민등록의 직권조치로 인한 인감대장의 정리
    - 비고란에 ○○년 ○월 ○일 “주민등록 직권말소 의거 인감 직권말소”, ○○년 ○월 ○일 “주민등록 재등록 의거 인감 직권부활”등 정리일자와 그 사유를 기재하고 인감담당공무원이 서명 · 날인한다.
  - 서면신고의 경우
    - 서면으로 인감신고를 받은 소관 증명청은 대리인이 제출한 인감을 인감란에 선명하게 날인 하거나, 신고서에 첨부된 인감지(신고할 인감을 백지에 선명하게 찍은 것)가 훼손되지 않도록 인감대장의 인감란에 부착하여 인감이 겹치지 않도록 증명청의 직인으로 간인한다.
    - 이때 신고연월일은 서면신고일을 기재하고, 인감의 비고란에 서면신고를 하는 “사유”(영 제8조제1항 참조) 와 “서면신고”라고 기재토록 하고, 대리인의 성명 · 주민등록번호 · 관계를 기재한 다음, 대리인의 무인을 받고 담당자가 서명 · 날인한다.
- 기재 예시) '03.46 질병으로 인한 서면신고, 대리인:홍길동(주민등록번호 :  
관계 : 숙부) 무인-담당자 홍길동(인)

〈서면신고시 인감대장의 작성예시〉



※ 인감지는 반드시 흰 종이를 사용함

○ 인감의 특징

- “인감의 특징”란에는 성명 변경,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을 기재하고, 가족관계등록관서(시·구·읍·면, 출장소)로부터 통보되어 온 한정치산자·금치산자가 있는 경우에는, 한정치산자·금치산자를 표기한 후 법정대리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를 기재하고 후 이를 확인한 인감담당공무원이 서명·날인한다.

○ 인감보호신청이 있는 경우

- “인감보호신청”란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호신청 내용을 기재하고, 기재 내용을 본인에게 확인하게 한 후 여백의 아래쪽에 본인의 서명 또는 무인을 받은 후 인감담당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다.
- 인감신고시 보호신청을 같이 받은 경우에는 신고사항 확인으로 같음하여 별도의 확인을 생략한다. 또한 인감의 보호에 대한 신청일이 인감신고일과 다른 경우에는 그 날짜를 기재한다.
- 인감보호신청 및 해제신청사항은 반드시 전산 입력하여야 한다.
- 아래의 인감보호신청사항 예시를 인감의 보호신청시 반드시 함께 창구 구술 안내하여 보호신청으로 인한 인감증명의 불가 등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안내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또한 아래의 예시는 인감의 보호신청사항

의 예시를 나열한 것으로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도 정당하게 인감신고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사항 대로 인감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한다.

《 인감의 보호신청사항 예시 》

- 본인의 인감증명 발급 불가
- 自洞발급신청의 경우에는 누구에게나, 他洞발급 신청의 경우에는 본인 외 발급 불가
- 본인이 입원시 : 배우자, 차남 홍 길동 이외에는 발급불가
- 본인이 해외출국시 : 장남 홍 길동 이외에는 발급불가, 재외공관 인증의 경우 발급 등
- 본인의 인감증명발급은 불가하나 불의의 사고시 인감증명발급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지정 : 특정인을 지정하는 문구를 반드시 등재하여 이를 본인에게 확인하게 한 후 본인의 서명 또는 무인을 받음. 이때 중요한 것은 『의식불명』 상태에 대한 의사진단서를 반드시 첨부하여 본인이 인감보호신청을 한 사항에 부합되도록 적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기재 예시) 본인의 『의식불명』 시 가능. 단, 배우자의 동의하에(혹은 상속인, 가족 등 특정인 지정)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것

〈인감의 보호신청란 작성 예시〉

인감의 보 호 신 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 청 일 : 2005년 2월 25일</li> <li>- 신청내용 : 본인, 처( 이름○○○, 주민등록번호) 외 발급금지</li> <li>- 접수기관 :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li> <li>- 정 리 일 : 2005년 2월 27일</li> <li>- 신 청 인 : ○ ○ ○ 서명 또는 무인</li> <li>- 담 당 자 : ○ ○ ○ 서명 또는 날인</li> </ul>
-------------------------	---

○ 인감보호신청에 대한 해제신청

- 인감보호를 신청한 자가 그 사항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시·군·구, 읍·면·동, 출장소를 방문하여 인감의 보호신청을 해제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분증 확인절차, 미성년자 처리의 경우 등 인감대장의 정리는 ‘인감보호신청’과 동일하게 처리한다.

〈인감보호 해제신청란 작성 예시〉

인감보호 해제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일: 2005년 4월 1일</li> <li>- 신청내용: 본인의 발급금지 해제</li> <li>- 접수기관: 서울특별시 은평구 역촌2동</li> <li>- 정리일: 2005년 4월 3일</li> <li>- 신청인 : ○ ○ ○ 서명 또는 무인</li> <li>- 담당자 : ○ ○ ○ 서명 또는 날인</li> </ul>
--------------	---

다. 증명청 경유 (서식 3쪽)

- 제3쪽은 “증명청 경유란”으로 인감의 신고나 주민등록의 전입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증명청 경유란의 순서와 제1쪽 주소이동사항의 순서를 일치시켜 증명청(읍·면·동)의 명칭을 기재하고 직인으로 날인한다.
- 또한, 관내에서 주소를 변경한 경우에도 제1쪽의 주소이동순서에 따라 증명청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하며 “인감관리대장번호”란에는 전입시 등재한 번호를 그대로 기재하여 관리하거나, 별도의 번호를 주어서 기재하는 등 증명청의 인감대장 관리방법에 따라 일련번호를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증명청 경유란 작성 예시〉

증 명 청 경 유 란					
순서	인 감 관 리 대 장 번 호	증명청 직인	순서	인 감 관 리 대 장 번 호	증명청 직인
1	거창 읍 면 동 제2003-1호	거 창 군 거창읍장 인		읍 면 동 제 호	

### 3. 재외국민 (영 제5조, 별지 제3호서식)

#### 가. 신고자 인적사항 (서식 1쪽)

- 재외국민이 인감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먼저 여권을 제출받아 여권번호, 유효기간 등 필요사항을 확인 후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의 열람을 통하여 내국인 인감대장 작성 예에 따라 한글·한자로 된 성명의 기재 등 해당사항을 빠짐없이 작성하되,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을 기록하여야 하며, 성별란은 해당사항을 “○”표시를 한 후 증명청에 신고된 순서대로 일련번호란에 번호를 부여한다.
- 등록기준지의 신고란에는 인감을 신고한 날짜를 기재하고 신고당시의 등록기준지를 기재 한다.
- 국내 최종주소지는 국외이주 당시의 주소를 기재하되 주민등록법 시행 전(‘68.8.28 이전)에 출국한 경우에는 본인이 최종주소지를 알고 있을 때에는 당해 주소지를, 주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빈란”으로 둔다. 이 경우 최종주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최종주소지 관할 행정청이 인감사무의 증명청(읍·면·동, 출장소)이 되고 주소지가 불명한 때에는 등록기준지가 증명청이 된다.

- 국외주소 이동사항은 인감신고 후 국외주소지 및 국내주소지의 변동이 있어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변경신고가 있는 경우 이를 기재하며, 상단의 신고란에는 인감신고 당시의 국외거주지를, 다음란에는 변경신고가 있을 때에 순차적으로 신고일과 거주지를 기재한다.

〈재외국민용 인감대장 작성 예시〉

일련번호	제 75 호	인 감 대 장			
		( 재외국민용 )			
성명 (한글·한자)	홍길동 (洪吉童)	여권번호	si578901	성별	남·여
		생년월일 또는 주민등록번호	4 8 0 0 0 0 - 1 6 0 0 0 0 0		
		등록기준지	91년4월3일 신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00번지		
국내최종주소지	92년7월15일 출국	경남 거창군 남상면 무촌리 632-2			
	92년7월15일 신고	東京都 港区 西新橋 3丁目 14番 3號			
	92년4월20일 변경	東京都 千代田區 神田神保町 3-6			
국외주소동향	년 월 일 변경				

나. 인감신고사항 (서식 2쪽)

- 제2쪽의 인감란은 내국인의 인감란을 그대로 첨부하여 사용하되(영 제5조제4항) 인감의 특징란에 재외국민 인감신고일자(출국일자), 출국자명단통보서 접수일자(필요시 주민등록표 참조)를 기재한다.

### 〈인감특징란 작성 예시〉

인 감 신 고 사 항			
인	인 감 란	년 월 일 (본인, 서면)	년 월 일 (본인, 서면)
감	인감 의 특징	재외국민 인감신고일(출국일자) : 년 월 일 출국자명단통보서 접수일자 : 년 월 일	

#### 다. 증명청 경유 (서식 3쪽)

- 증명청 경유란의 기재요령 및 관리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작성 요령과 같다.

## 4. 외국인 (영 제5조, 별지 제4호서식)

#### 가. 신고자 인적사항 (서식 1쪽)

- 신고대상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 한하므로 외국인의 인감신고가 있는 때에는 외국인등록표의 기재내용 및 외국인이 소지한 외국인등록증의 내용에 따라 흑색필기구로 정확하게 기재하되 서식의 앞면은 외국인등록표와 항목별로 일치하므로 이를 참고하여 기재한다.
- 또한, 출입국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입국한 외국인이 등록한 때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하고 외국인등록표를 당해 외국인이 체류하는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도착여부를 먼저 확인하여야 한다.

※ 외국인의 성명표기는 ‘성’은 그대로, 그 ‘명’은 축약형으로 등재 가능함.

#### 나. 인감신고사항 (서식 2쪽)

- 인감신고사항의 작성, 인감의 특징, 인감의 보호신청, 인감보호 해제신청, 비

고란의 기재요령 및 관리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작성 요령과 같다.

**다. 증명청 경유 (서식 3쪽)**

○ 증명청 경유란의 기재요령 및 관리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작성 요령과 같다.

〈외국인용 인감대장 작성예시〉

일련번호	제21호 <u>인 감 대 장</u> ( 외국인용 )				
성명(한자)	TANAKA ICHIRO (田中一雄)			성 별	남·여
외국인 등록번호	700000 -5100000	입국일자	00. 10. 6	체류자격 직·업	F-4 비자 상사 주재원
여권번호	MM15900000	국 적	일 본	체류기간	04. 10. 5
여권발급일	00. 8. 20	생년월일	61. 5. 15	유효기간	05. 10. 5
국 내 체류지 변경 사 항	00년10월 6일 신고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남산2리국민APT 0동000호		
	년 월 일 변경				
	년 월 일 변경				



## 5. 국내거소신고자 (영 제5조, 별지 제5호서식)

### 가. 신고자 인적사항 (서식 1쪽)

- 신고대상은 재외동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인 경우에 한한다.
- 공항만을 통하여 입국한 재외국민이나 외국국적동포가 재외동포법의 규정에 따라 국내거소자로 등록한 때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출장소장 포함)은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하고 국내거소신고원부를 당해 국내거소신고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에게 송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도착여부를 먼저 확인하여야 한다.
- 국내거소신고자의 인감신고가 있는 때에는 국내거소신고원부 및 소지한 국내거소신고증, 여권의 내용에 따라 인감대장에 정확히 기재한다.
- 국내거소신고자의 인감신고 증명청은 전국의 시장, 구청장,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이며, 신고자의 신고명칭은 재외국민인 경우는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에 의하여야 하고, 외국국적동포인 경우에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에 의하여야 한다.

### 나. 인감신고사항 (서식 2쪽)

- 인감신고사항의 작성, 인감의 특징, 인감의 보호신청, 인감보호 해제신청, 비고란의 기재요령 및 관리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작성 요령과 같다.

### 다. 증명청 경유 (서식 3쪽)

- 증명청 경유란의 기재요령 및 관리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작성 요령과 같다.

**<국내거소신고자용 인감대장 작성 예시>**

1.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자의 경우

일련번호	제10호					<b>인 감 대 장</b>		(국내거소신고자용)	
성명(한자)	홍길선 (洪吉善)			성 별	남·여				
국내거소자 등록번호	700000 -6000000	입국일자	00. 10. 6	체류자격 직업	F-4 비자				
여권번호	MM1594701	국 적	한 국	체류기간					
여권발급일	00. 8. 20	생년월일	61. 5. 15	유효기간	05. 10. 5				
국 내 거 소 지 변 경 사 항	00년10월 6일 신고		경남 거창군 남상면 무촌리 632-2번지						
	년 월 일 변경								
	년 월 일 변경								

2.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의 경우

일련번호	제10호					<b>인 감 대 장</b>		(국내거소신고자용)	
성명(한자)	HONG GIL SOON			성 별	남·여				
국내거소자 등록번호	700000 -6000000	입국일자	00. 10. 6	체류자격 직업	F-4 비자				
여권번호	MM1500000	국 적	미 국	체류기간	04. 10. 5				
여권발급일	00. 8. 20	생년월일	61. 5. 15	유효기간	05. 10. 5				
국 내 거 소 지 변 경 사 항	00년10월 6일 신고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남산1리국민APT A동100호						
	년 월 일 변경								
	년 월 일 변경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 서식〉

(앞쪽)

<b>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b>		사 진 24mm×28mm
730429-1001001 홍 길 동		
거주국 :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 6동 새나라(아) 1209-1234		발급일자 : 2007.01.31.
○○출입국관리사무소장 [인]		
CHIEF, ○○IMMIGRATION OFFICE 거소신고증 문의 ☎		

85.6mm× 54mm PVC 0.76T

(뒤쪽)

신고사항 변경·추가란				
일 자	구 분	내 용	처리기관	확인자

※ 이 신고증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서식>**

(앞쪽)

<b>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b>		사 진 24mm×28mm
730429-1001001 <b>HONG GIL DONG(한글성명)</b>  국적 : 뉴질랜드 체류자격 : F-4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 6동 새나라(아) 1209-1234  ○○출입국관리사무소장 [인]  CHIEF, ○○IMMIGRATION OFFICE 거소신고증 문의 ☎		

85.6mm× 54mm PVC 0.76T

(뒤쪽)

신고사항 변경·추가란						
일 자	구 분	내 용			처리기관	확인자
	1	2	3	4	5	6
체류기간						

※이 신고증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 Ⅶ. 인감대장 및 인감관리대장의 관리

### 1. 인감대장의 관리 (법 제4조)

#### 가. 인감대장 관리요령

- 인감대장은 개인의 재산권 행사와 관련된 중요한 공부라는 점에서 작성된 인감대장은 안전하게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 인감대장은 보존용 비닐커버 등을 사용하여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 인감대장은 인감신고자의 생년월일 순으로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성명, 가, 나, 다순 등 증명청의 여건에 따라 다르게 관리할 수 있다.
- 인감대장은 색 테이프를 이용하여 인감대장 관리에 편의를 도모한다.
- 인감대장 관계서류는 대외비에 준하여 견고한 상자나 이중캐비닛 등에 보관한다.
- 말소된 인감대장은 다른 인감대장과 구분하여 사용중인 인감대장의 관리요령에 준하여 보관·관리한다.

#### 나. 인감화일 관리요령

-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수록된 인감화일은 멸실·손상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인감화일의 입력·출력·편집·검색 기타 그 밖의 인감업무 운영은 권한 있는 자에 의거 처리되어야 하며, 작업자 관리는 대외비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인감화일 관리자·작업자는 그 증명청의 현황을 고려하여 관리한다.
  - ※ 관리자·작업자의 운영은 자치단체의 자체 운영방침을 정하여 운영하여도 무방

## 2. 인감대장 서식의 관리

### 가. 임의 인쇄서식 사용 금지

- 인감대장[제2호~제5호 서식]은 자치단체별로 일괄 구입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임의 인쇄한 서식은 사용을 금지한다.

### 나. 인감대장 수불부 작성·비치

- 작성된 인감대장뿐만 아니라 기록되지 않은 서식이라도 대외적으로 유출될 경우 인감의 위·변조 발생가능성 등이 있으므로 다음 서식에 준하여 수불부를 작성·비치하고 정확히 관리하여야 한다. 이때 대장의 양식은 아래 서식을 기준으로 하여 기관의 실정에 맞도록 적절히 변경하여 사용한다.

#### 〈인감대장 수불부 작성 예시〉

일련 번호	성 명	주 소	사 유	용지 수불	결 재	
					담당자	담당
1	홍길동	남상면 무촌리 632-2	신규	400		
2	남길동	남상면 진목리 456	주소간 부족	399		
3	변길선	남상면 송변리 342	인감간 부족	398		
4	변길선	남상면 송변리 342	사용중 훼손	397		

## 3. 인감관리대장의 관리 (영 제5조제2항)

- 증명청은 인감대장을 새로 작성하거나, 주민등록의 전입신고, 재외국민의 등록기준지 변경신고로 인감대장이 이송되어 올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인감관리대장에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비고란에 인감대장 작성날짜와 전입, 전출, 신규, 말소, 등록기준지 변경신고사항 등을 기재한다.

- 또한, 전출·사망 등으로 인감대장을 관리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붉은색 필기구로 2줄로 삭선하고 같은 방법에 따라 날짜 및 사유를 기재한다. 이때 말소된 자가 동일 증명청에 재등록을 하는 때에는 관리번호를 별도로 부여하지 않은 채 말소 표시된 비고란의 여백에 재등록 사유와 날짜를 기재하여 관리한다.
- 인감관리대장을 행정리별로 관리하는 증명청은 관내전입(행정리 변경)의 경우 인감관리대장번호의 재부여도 허용되며, 수기 관리대장이 아닌 인감전산프로그램에 의한 전산관리 방식도 허용된다. 단, 인감관리대장은 업무종료 결산 후 출력 관리하여야 한다.
- 인감 일일현황 집계 및 인감대장 관리 유의사항
  - 인감일일현황은 통계 작성시 활용되는 중요 자료이므로 집계는 반드시 매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하고, 필요시 출력하여 활용할 수 있다.
  - 전산으로 인감대장을 전송받은 신증명청은 인감관리대장 [별지 제6호서식]을 전산출력 하여 수기인감대장 도착시 인감신고사항의 누락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하여야 하고, 확인(대사) 및 보완(정리)이 완료된 대장은 인감관리대장 비고란에 담당자가 날인하여 관리한다.

〈인감관리대장 작성 예시〉

**인 감 관 리 대 장**

관리 번호	신 고 인			송부기관	이송기관	비 고
	성 명	주민등록 번호	주 소	년 월 일	년 월 일	
				담 당 자	담 당 자	
415	이기자	340706 -1145126	익원동 217			'79. 6. 27 신규신고 '99. 12. 1주면등록지권 喪소의거 인감직권喪소 (담당자 서명) '03. 4. 3주면등록재등록 의거 인감직권부활 (담당자 서명)
	<del>이기자</del>	<del>340706 -1145126</del>	<del>익원동 217</del>	000(서명 또는 인)	000(서명 또는 인)	
416	이기고	360707 -1145128	익원동 219			'75. 8. 17 신규신고 '96. 12. 31사망신고  (담당자 서명)
				000(서명 또는 인)	000(서명 또는 인)	
417	이기리	370701 -1145130	익원동 221	남원시 수지면	의성군 의성읍	※'96. 1. 17 남원시 수지면에서 전입 하였고 '97. 2. 28 의성군으로 으로 전출하였을 경우  (담당자 서명)
				'96. 1. 17	'97. 2. 28	
418	이기순	hw1451311	익원동 221		거창군 남상면	※'98. 3. 8 재외국민 등록기준지변경 사항 에 의한 이송의 경우  (담당자 서명)
				000(서명 또는 인)	000(서명 또는 인)	
419	<del>이기환</del>	<del>340706 -1145126</del>	<del>익원동 217</del>		강릉시 노암동	※'96. 1. 15 강릉시 노암동으로 전출 하였을 경우  (담당자 서명)
				000(서명 또는 인)	000(서명 또는 인)	

## VIII. 신고사항의 변경

### 1. 국내에 주소를 가진 국민 (법 제8조 및 제9조)

-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의 인감신고사항(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의 변경신고와 사망 · 실종신고의 신고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신고로 같음하여 처리하도록 하며, 명칭변경, 통반변경, 행정구역변경 등 주소변경에 따른 사항과 직권조치에 관한 사항의 정리도 주민등록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 2. 재외국민 · 외국인 · 국내거소신고자 (영 제11조)

- 재외국민 및 외국인 또는 국내거소신고자의 인감신고사항의 변경신고와 사망 또는 실종신고의 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월(재외국민의 경우에는 3월)이내에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증명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외국민이 등록기준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등록기준지의 통보에 따라, 국내거소신고자의 거소지 변경이나 외국인의 체류지 변경에 대하여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 포함)의 통보에 따라 인감대장을 정리하므로 별도의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 국내거소신고자 등 출입국정보 실시간 조회기능에 따른 관리방법
  - 그동안 외국인이나 국내거소신고자(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신분변동 사항 및 체류기한(연장) 여부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한 수동적 확인을 하는 방법으로 운영하였으나, 실시간 자료 확인이 가능 하도록 개선하였다.
  - 그에 따라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자의 경우 해당자의 「국적」란을 확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체류기한 경과 여부를 불문하고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자로 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 단, 국내거소신고증의 반납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는 지체 없이 거소신고된 인감을 직권말소 하여야 하며, 거소신고자용 인감증명발급은 할 수 없다.
-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의 경우에도 기한만료 및 연장여부에 대해 실 시간 확인이 가능하므로 「체류기한, 재입국허가」란 등을 반드시 확인한 후 연장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인감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가 없으므로 종전과 같이 재연장 허가를 득하게 한 후 처리하기 바라며, 재연장 허가를 득하지 않은 경우, 인감발급을 거부하여야 한다.(주민제도팀-1760, '05.7.1)

## IX. 인감의 변경

### 1. 신고에 의한 변경 (법 제13조, 영 제16조)

- 인감신고자는 ‘인장의 마멸 또는 훼손으로 인감화일에 수록하기에 부적합한 때’ 또는 ‘인장의 분실 또는 인감의 보호’ 등을 이유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감의 변경을 신고할 수 있다.
  - 신고방법은 본인이 직접 증명청을 방문하거나 서면신고서[별지 제9호서식]에 의해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다.
  - 인장의 마멸 또는 훼손의 정도는 증명청이 판단하여 처리하도록 하되 인감신고인의 성명이 현저하게 식별이 곤란한 경우, 인감의 성명이 완전하지 않은 경우(성의 표기가 없이, 명만 표기되어 있는 경우), 혹은 인감의 테두리가 당초의 상태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마모되었을 경우 등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운영하도록 한다.
  - 종전에 인감으로 신고하였던 인장(과거의 인감)으로 인감을 변경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현행법상 명시적 제한이 없으므로 적법절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한다면 수리하여야 한다.
  - 금치산자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여야 하고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과 같이 방문하거나 서면 동의가 있어야 한다.
- 본인이 증명청을 방문하여 인감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을 제출 받아 신분을 확인한 후 증명청은 본인이 보는 앞에서 인감대장의 해당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인감대장 제2쪽의 비고란에 “인감변경신고”로 기재하고 그 마지막에 신고인의 무인을 받은 후 담당자가 서명·날인한다.

○ 서면으로 인감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을 제출받아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한 후 증명청은 서면변경신고서[별지 제9호서식]에 첨부된 입증자료가 영 제12조제3항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보증인의 인감을 확인하거나 인감지를 인감대장의 인감란에 부착하는 것 등은 최초 서면신고의 절차와 같은 방법으로 수행하면 된다.

- 그런 다음 작성한 인감대장의 해당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인감대장 제2쪽의 인감의 비고란에 “인감변경 서면신고”라고 기재하고 그 끝에 대리인의 무인을 받은 후 담당자가 서명·날인한다.

기재 예시) '03.4.6 질병으로 인한 서면인감변경신고. 대리인:홍길동(주민등록번호, 관계:숙부) 무인-담당자 홍길동 (인)

○ 같은 날짜에 서로 다른 인감으로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 오전에 인감을 증명 받았으나 오후에 다시 인감증명서가 필요하여 증명을 신청하는 경우, 오전에 발급받은 인감을 분실하여 인감변경 후 발급받고자 한다면 이론상 같은 날짜에 서로 다른 인감증명서를 발급하게 된다.
- 이러한 경우에는 가능한 다음날에 발급받도록 행정지도 하되 이는 강요할 사항은 아니며 신청인이 증명을 요구할 경우에는 발급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할 것이다. 이 경우 증명 신청시 현재 증명청에 신고 되어 있는 인감임을 증명하는 인감증명서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며 거래의 성립으로 인한 당사자간의 인감날인과 함께 계약체결의 의사(계약체결 위임시 위임의사도 포함)를 가졌는가 여부에 따라 그 계약의 효력여부는 결정될 것이다.

## 2. 인감변경신고 관리대장 작성

- 인감변경(방문·서면)신고를 받은 증명청은 인감대장의 정리가 끝난 후 수수료를 징구하여야 한다. 수수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징구하여야 하나 인증기를 활용하여 수납하는 것도 가능하다.
- 방문·서면신고 모두 다음 서식에 준한 인감변경(방문·서면)신고 관리대장의 해당란에 첨부하고(이면 첨부도 가능),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관리하며 이때 대장의 양식은 각 증명청의 현황에 맞게 적절히 변경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인 감 변 경(방문·서면) 신 고 관 리 대 장〉

결 재		일련 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수수료첨부란
담당자	담 당				
					※전산입력필(담당자날인)

## X. 인감의 말소 및 부활

### 1. 인감의 말소 (법 제11조, 영 제12조)

#### 가. 신고에 의한 말소

- 인감신고자는 증명청에 방문 또는 서면으로 인감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신고방법은 본인이 직접 증명청을 방문하거나 인감말소신고서[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여 서면 신고할 수 있다.
  - 금치산자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여야 하고,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과 같이 방문하거나 서면 동의를 있어야 한다.
- 본인이 증명청을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
  -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을 제출 받아 신분을 확인한 후 증명청은 본인이 보는 앞에서 그 인감대장 제2쪽의 인감의 비고란에 “○○년 ○○월 ○○일 말소신고”라고 기재하고, 그 끝에 신고인의 무인을 받은 후 담당자가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한다. 이때 인감대장을 삭선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 서면으로 말소신고 하는 경우
  -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을 제출받아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한 후 증명청은 말소신고서 [별지 제12호서식]에 날인된 인영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신고된 인감의 인영과 같은 때에는 인감대장의 비고란에 영 제12조제3항에 규정된 서면신고 사유와 “○○년 ○○월 ○○일 서면신청 말소”라고 기재하고 대리인의 무인을 받은 후 담당자가 서명·날인한다.  
기재 예시) '03.4.6 질병으로 인한 서면신청말소. 대리인:홍길동(주민등록번호: 관계: 숙부) 무인-담당자 홍길동(인)
-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자 인감신고서 인감말소 신청
  - 국내거소신고자가 재외국민으로 신고한 인감을 말소신청 하고자 본인이 직

접 소관 증명청을 방문한 경우에는 내국인과 같은 절차로 수행하면 되나 거소지 관할 증명청에 출원한 국내거소신고자의 편의 제공과 행정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거소지 관할 증명청은 방문한 국내거소신고자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을 제출받아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을 확인한 후 이를 관할 증명청으로 FAX 전송하고 3일 이내에 우편으로 등기우송 한다. 이를 FAX 수신한 재외국민 소관 증명청은 신고된 인감을 즉시 전산으로 말소처리하고, 이후 신청서가 도착하면 서면말소신청 절차에 준하여 보관중인 인감대장을 말소처리 한 후 이를 별도로 영구보관 하도록 한다. 이때 말소일자는 전산처리 일자를 기재하며 우편도착일은 인감의 특징란에 그 사유와 함께 따로 기재한다.

기재 예시) '03.4.6 국내거소신고자의 인감말소신청에 의거 인감말소,'03.4.9  
인감말소신청서 도착

- 국내거소신고자의 재외국민 신분당시의 인감말소신고서 작성요령
  - 인감란에는 재외국민으로 신고한 인감을 날인한다.
  - 거소지 관할 증명청은 날인된 인감이 신고된 인감인지 여부를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 신고사항란에는 “인감말소신청”으로 기재한다.
  - 서면신고 사유란에는 “거소지 소관 증명청에서 신청”으로 기재하고, 입증자료란에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이라고 기재한 후 그 사본을 [별지 제12호서식]우송시 함께 동봉하여 우송하며, 국내거소신고증사본에는 소관증명청 · 인감담당공무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날인한다.
  - 국내거소신고자의 거소지 소관 증명청에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대리인란에 “해당사항 없음”표시를 한다.

## 나. 직권에 의한 말소

○ 증명청은 주민등록이 직권말소 되거나 인감신고자가 사망 또는 실종 선고된 사실을 안 때에는 사실을 안 날짜에 신고된 인감을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 인감의 직권말소시 유의사항

- 증명청이 직권말소를 하고자 할 때에는 가족관계등록부, 외국인등록표, 재외공관의 확인서, 등록기준지 조회, 국내거소신고증 반납사실 또는 공무원의 현지사실조사 등의 방법에 의하여 미리 사실을 확인한다. 이때 현지사실 조사를 하는 경우에 증빙자료(예 : 부고, 상여 사진 등)가 있을 경우에는 그를 확보하여 말소하는 인감대장에 첨부하여 두도록 한다.

기재 예시) '03.4.6 현지 사망사실조사에 의거 '03.4.6 인감직권말소 - 담당자 홍길동(인)

'03.4.6 실종선고사실조사에 의거 '03.4.17 인감직권말소. 담당자 홍길동(인)

- 증명청이 직권말소를 할 때에는 인감대장의 제1쪽 주소이동사항란과 제2쪽 비고란에 직권말소 사유와 “○○년 ○월 ○○일 직권말소”라고 붉은 글씨로 기재한 후 담당자가 서명 · 날인한다.

기재 예시) '03.4.6 주민등록 직권말소의거 '03.4.6 인감직권말소. 담당자 홍길동(인)

○ 국내거소신고자 인감의 직권말소

- 증명청은 법 제11조제1항의 사유로 국내거소신고자의 인감을 직권말소 할 때에는 등록기준지 · 외국인등록표 · 재외공관의 확인서 · 등록기준지 조회 · 국내거소신고증 반납사실 또는 관계공무원의 사실조사 등의 방법으로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 이때 국내거소신고증 반납사실과 관련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재외동포법 제8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증을 반납 받은 경우에는 출

입국관리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준하여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거소지 관할 시·군·자치구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다. 주민등록말소자의 인감증명발급

- 주민등록이 말소되면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인감도 같이 말소되므로 증명을 발급할 수 없다. 따라서 관광 또는 일시적 취업 등의 사유로 출국하였으나 관할 증명청에 이러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관할 증명청에서 실제 거주하지 않음을 이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주민등록 자체가 부활되지 않는 한 인감증명을 발급할 수 없다.
-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던 자가 재등록시 구 거주지와 현거주지가 다른 경우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제4항의 규정에 의거 재등록과 동시에 전입처리가 되는 현행제도에 의하여 현거주지 증명청이 비고란에 인감직권부활사항을 정리하는 증명청이 된다. 따라서 재등록지에서는 법정이송기일 내(3일)에 말소인감대장을 이송하여 열람신청 등 각종 민원에 대비하여야 한다.
- 국외이주신고 없이 출국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된 재외국민이 인감을 신고하는 경우일지라도 소관 증명청에서 재외국민에 대한 인감의 신고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2. 말소인감의 부활 (법 제11조)

### 가. 직권부활 방법

-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가 주민등록법령에 의하여 재등록 또는 직권부활 되었을 경우에는 말소된 신고인감도 같이 부활시켜야 하며, 말소된 인감을 직권부활한 경우에는 인감대장의 제2쪽 비고란에 그 사유와 “○○년 ○월 ○○일

직권부활”이라고 기재한 후 담당자가 서명·날인한다.

기재 예시) '03.46 주민등록 재등록 의거 직권부활. - 담당자 홍길동(인)

#### 나. 인감의 부활과 재등록의 구별

- 「인감의 부활」은 말소된 인감을 신고인의 의사표시에 의거 다시 인감을 신고하는 것이며, 내국인 「인감의 재등록」은 신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주민등록의 직권 재등록에 의거 말소된 인감이 다시 등록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Ⅹ. 인감대장의 이송

### 1. 이송대상 (영 제5조의3)

- 인감신고자가 주소이전, 등록기준지변경신고 등을 하였을 경우에는 증명청은 인감과 관련된 공부를 새로운 증명청에 3일 이내에 이송하여야 한다.
- 이송대상 공부
  - 인감을 신고한 자 또는 인감이 말소된 자가 주소(증명청)를 옮긴 때  
: 인감대장 [별지 제2호서식]
  - 재외국민중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한 자가 등록기준지를 변경한 때  
: 인감대장(재외국민용) [별지 제3호서식]
  - 재외국민중 등록기준지가 아닌 최종주소지에 인감을 신고한 자가 등록기준지를 변경한 때  
: 재외국민 인감신고기록대장 [별지 제7호서식]
  - 출입국관리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을 한 자가 체류지를 옮긴 때  
: 인감대장(외국인용) [별지 제4호서식]
  - 재외동포법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한 자가 거소지를 옮긴 때  
: 인감대장(국내거소신고자용) [별지 제5호서식]

### 2. 이송방법 (영 제5조의3)

#### 가. 국내에 주소를 가진 국민

- 구증명청의 인감담당자는 주민등록전산망에 의하여 인감신고자의 전출 사실이 통보·확인되면 거주자인지 말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전출자의 인감

대장을 적출하여 증명청 경유란에 직인(민원직인 제외)을 날인한 다음 인감관리대장[별지 제6호서식]에 이송기관과 날짜 등을 정리하고(비고란에 재등록사항 표기) 3일 이내에 신증명청에 이송토록 한다.

- 인감대장 및 관련공부를 이송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시·군·자치구의 관내인 경우에는 해당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이송할 수 있다.
- 인감이 말소된 자의 경우는 인감대장 제1쪽 주소란에 해당사항을 기재하여 위의 방법에 준하여 이송토록 하되, 주민등록 재등록과 동시 전입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아래의 방법에 의거 이송처리 한다.

《 구거주지 증명청 담당자 》

- 주민등록의 직권말소에 의하여 인감이 말소된 자가 주소를 이전하는 때에는 (재등록 동시 전입) 인감대장 제1쪽 주소란에 재등록 주소 및 그 사유(“재등록”)와 날짜를 기재한 후 인감담당자가 날인하도록 하고, 제3쪽의 증명청 경유란에 직인을 날인한 다음 신거주지 증명청으로 이송한다.

《 신거주지 증명청(현거주지 증명청)의 담당자 》

- 구거주지 증명청으로부터 인감대장이 이송되어 오면 인감대장 제1쪽 주소란에 현주소 및 사유(“전입”)와 날짜를 기재하고 제2쪽의 비고란에 그 사유(“주민등록 재등록의거, 인감직권부활”)와 날짜를 기재한 후 인감담당자가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한다.

## 나. 재외국민

- 재외국민이 등록기준지 변경신고를 하였을 경우,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인감이 신고 되어 있는 때에는 구증명청은 14일 이내에 전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족관계등록관서로부터 통보 받은 재외국민의 등록기준지변경사항 통보서[별지 제1호서식]와 함께 재외국민용 인감대장을 신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이송한다.

- 또한, 최종주소지에 인감이 신고 되어 있는 때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활용하여 재외국민등록기준지 변경사항 통보서를 출력하여 확인한 후, 보관하고 있는 재외국민용 인감대장[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기준지란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고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에서도 재외국민등록기준지 변경사항 통보서를 출력하여 1부는 보관용으로, 1부는 재외국민 인감신고기록대장[별지 제7호서식]과 함께 신등록기준지 증명청으로 이송한다. 등록기준지를 변경한 등록기준지가 시·구인 경우에는 시·구에서 등록기준지변경사실을 확인한 후 관련공부를 관할 동으로 이송한다.

※ 등록기준지란 기재요령 : 두 번째 칸에 기재할 사항은 인감신고 확인일(우편 도착일)과 변경된 등록기준지를 기재 후 하단에 등록기준지 변경신고일을 기재

일련번호		제 75 호		<u>인 감 대 장</u> ( 재외국민용 )		
성 명 (한자)	김 갑 수 ( 金 甲 洙 )	여권번호	si578901	성 별	남·여	
		생년월일 또는 주민등록번호	4 8 0 0 0 0 - 1 6 0 0 0 0 0			
등 록 기 준 지	91년4월3일 신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0번지				
	'03년4월6일 신고 (우편 도착일)	경남 거창군 남상면 무촌리 000번지 ( '03.3.26 등록기준지 변경신고 )				
	년 월 일 신고					

재외국민 인감신고기록대장		
인 감	등록기준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0번지
	등록기준지	경남 거창군 남상면 무촌리 632번지
신	등록기준지	
고 인	주 소	국 내
		국 외

\* 재외국민 인감신고기록대장은 인감전산시스템에 구현되어 있지 않음.

○ 내국인으로 신분변동시 인감대장 이송 및 관리 방법

- 재외국민이 영구 귀국하여 내국인으로 신분이 바뀌면 재외국민 인감대장에 종전 첩부하여 사용하던 말소된 내국인 인감대장을 분리하여 신증명청에 이송하여야 한다.
- 이때 구증명청은 말소된 내국인 인감대장 제2쪽을 복사하여 재외국민 인감대장에 첩부하여 관리한다.

○ 재외국민의 최종주소지에 신고된 인감을 등록기준지로 옮길 수 있는지 여부

- 재외국민이 최종주소지에 인감을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 증명청을 변경할 수 없다. 재외국민은 국내에 주소를 가지지 아니한 자 이므로 주소변동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주소이동사항이 없으며, 다만 등록기준지를 변경할 경우 등록기준지 이력 및 증명청 경유란만 추가한다.
- 그러나, 재외국민의 최종주소지가 확인됨에도 등록기준지에 인감이 신고 되어 있는 경우, 등록기준지의 인감증명 담당자는 최종주소지 담당자와 협의 하여 인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인감대장을 이송조치 하고, 신증명청의 담당자는 인감대장이 이송되어 온 날 증명청 변경 후 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 다. 외국인

- 출입국관리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을 한 자가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증명청은 그 신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인감대장을 새로운 증명청으로 이송하되 이송방법은 내국인의 경우와 같다. 다만, 외국인의 체류지 변경신고 절차는 출입국관리법령이 정한 바에 따른다.

#### 라. 국내거소신고자

- 재외동포법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한 자가 거소지 이전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증명청은 그 신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인감대장을 새로운 증명청으로 이송하되 이송방법은 내국인의 경우와 같다. 다만, 국내거소신고자의 거소지 이전신고 절차는 재외동포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 **XII. 인감증명의 신청**

### **1. 방문에 의한 구술신청 (법 제12조, 영 제13조)**

#### **가. 신청방법**

- 인감증명을 발급받으려 하는 본인이 직접 증명청을 방문하여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주소,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장애인등록증은 제외),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을 제시하고 구술로 신청한다.
- 금치산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하며, 미성년자 및 한정치산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명청은 [별지 제13호서식]의 법정대리인란에 날인된 인장이 인감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 **나. 부동산매도용<sup>3)</sup> 인감증명발급 관련 유의사항**

- 매수자 인적사항 작성요령
  - 부동산매도용으로 증명을 발급하는 경우 인감담당자는 신청인이 구술하는 매수자 인적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활용하여 전산 입력하여야 하며,
  - 신청인이 구술하는 매수자 인적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활용하여 입력한 내용은 인감용지 인쇄시, 출력되지 아니하므로 신청자 본인이 매수자 인

---

#### 3) 부동산 매도 개념의 이해

- 부동산의 범위 : 토지 및 정착물 즉, 토지와 건물을 말하는 것임.(민법 제99조제1항)
- 매도의 개념 : 매매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를 말하며 증여, 상속 등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은 제외됨.(법원행정처 등기질의회신 제534호, '83.12.3)
  - ※ 선박등기를 위한 인감증명 발급 신청인 경우는 매수인 인적사항을 기재할 필요가 없으며, 일반용도로 발급 하여야 함.

적사항을 자필로 기재한 후 발급토록 한다.

- 신청인은 인감용지에 인쇄된 인감증명서 [별지 제14호서식]를 증명청으로부터 제출받아 직접 부동산매수자란에 매수자의 인적사항, 즉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를 다음 요령에 따라 정확히 기재한다.(단,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대표주소를 기재)

《 매수자 인적사항 작성요령 : 신청인이 직접 작성 》

- 매수자 성명은 한글, 한자 모두 가능하나 주소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9조제3항에 규정된 사항대로 정확하게 기재
- 매수자의 성명은 개인의 경우는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표의 성명을, 법인의 경우는 등기부상의 법인명을 기재
- 주소는 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 혹은 본인이 원하는 주소지를, 법인인 경우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기재
- 이때 매수자 인적사항란의 주소는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와 다른 주소지를 신청인이 기재 후 발급되었을 경우 인감증명법·등기법상의 하자는 없으나 이후 주소의 경과가 나타나지 않는 등의 문제로 인한 등기불가 등의 불이익은 본인이 감수하여야 함.
-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의 경우에 주민등록번호,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 등을 기재

○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발급시 기재요령('06.12.20 시행)

《 매수자 인적사항 》

- 부동산매수자 인적사항은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증명이 필요한 사항이 아니라 부동산 등기를 원인으로 하는 매수자의 인적사항을 소극적으로 확인하는 것에 불과한 행위이다.
- 다만, 민원인에 대한 편의증진 차원에서, 신청인이 기재한 매수자 인적사항을

전산으로 확인 후 주소의 일부가 누락되거나 오기재 되어있는지 등을 확인한 후, 민원인의 동의를 얻어 정당한 「공법상의 주소」가 기재될 수 있도록 협조한다.

《 비고란 》

- 재외국민의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발급시, 사전절차로서 위임장의 세무서장 확인란에 이전할 부동산의 종류와 소재지를 기재 후 세무서장의 확인을 거치도록 되어 있다.
- 증명청의 담당자는 세무서장의 확인내용을 인감전산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하며, 출력된 인감증명서의 비고란에 신청인이 부동산의 종류와 소재지를 직접 기재하여 다시 제출하면 증명청의 담당자가 비고란에 날인 확인 후 발급하여야 한다.
- 유의사항으로서, 부동산의 종류와 소재지는 재외국민,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자의 경우만 기재토록 하고, 내국인 ·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자 · 외국인은 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면적 기재는 불가)

기재 예시) 경남 함양군 지곡면 창평리 518번지.답 (담당자 날인)

(주민제도팀-7494, '06.12.14)

**<부동산매수자 인적사항 기재 예시>**

부 동 산 매 수 자	성 명 (법인명)	(담당자 낱인)나대호	주민등록번호	490000 - 1200000
	주 소	충청남도 부여군 외산면 비앞리 621번지 (담당자 낱인)		

**<부동산매도용이 아닌 경우 기재 예시>**

부 동 산 매 수 자	성 명 (법인명)	(담당자 낱인) 『빈칸』 (담당자 낱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비 고				

※ 부동산매도용이 아닌 경우 성명란에 『빈칸』 임을 표시하고 빈칸 앞과 뒤에 담당자 낱인

## 2. 위임에 의한 대리 신청 (영 제13조)

### 가. 신청방법

- 인감증명의 발급을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인감증명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위임을 할 수 있는 자는 제한되어 있지 아니하나 위임을 받을 수 있는 자는 17세 이상으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을 소지한 자이어야 한다.
-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가 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서식 내의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명청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활용하여 법정대리인의 인감이 신고된 인감인지의 여부를 확인한다.
- 인감전산프로그램상 인감증명 대리발급 신청자 신분확인
  - 인감증명 대리발급 신청자의 신분은 제한되어 있지 않으며, 인감전산프로그

랩상 외국인과 국내거소신고자의 경우는 신분확인시 출입국정보시스템 등을 조회하여 확인이 가능하다.

- 재외국민의 경우는 과거 주민등록 전산이력이 있는 경우에 조회·열람이 가능하며, 전산인감대장에 있는 ‘본인확인’의 「내국인」, 「내국인외」를 통하여 조회·열람 한다.
- 1968년도 이전 출국자는 전산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증명청의 담당자는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신분을 확인한다.

#### 나. 위임장 작성내용 확인시 유의사항

- 위임자란은 날인이어야 하며(서명은 불가), 반드시 신고된 인감도장일 필요는 없다.
- 발급 통수는 2통 이상일 경우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연월일은 대리인이 위임자로부터 위임 받은 날을 기재토록 한다.
- 사용용도, 관계란은 기재하도록 하되 위임사유는 출국자인 경우 신청방법이 규정되어 있으므로(영 제13조제2항 참조)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 국내에 주소를 둔 자로서 일시 출국한 자가 대리로 인감증명을 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 재외공관을 경유하거나, 위임자의 신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예시) 출국자의 위임사유를 장기출타, 출장 등 집을 떠나 있음을 의미하는 사유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표기토록 안내
  - 장기출타(국외), 출장(국외)
- 인감증명위임장은 워드나 복사하여 사용하는 것은 수리가 불가하다.

### 3. 재외국민의 인감신청 (영 제13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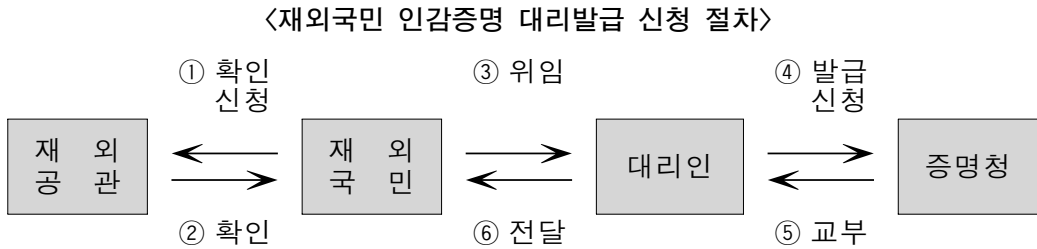
#### 가. 본인 직접신청

- 재외국민이 귀국하여 본인이 직접 인감증명을 신청한 때에는 전국 어느 시·군·구, 읍·면·동 및 출장소에서나 인감증명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출원에 의한 인감증명 절차에 따라 이를 신청 받은 시·군·구, 읍·면·동 및 출장소장은 본인여부를 여권으로 확인하고,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 국내체류중인 재외국민의 증명신청시 재외공관의 확인 여부
  - 재외국민이 직접 신분증명서(여권)를 제시하고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외공관의 확인을 요하지 아니한다. 이때 부동산매도용의 인감증명을 신청하는 경우 소관 증명청 또는 부동산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어디든지 가까운 시·군·구, 읍·면·동 및 출장소를 방문하여 인감증명을 신청할 수 있다.
  - 다만, 재외국민이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는 한 경우(대리신청), 국내체류 여부를 불문하고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나. 대리인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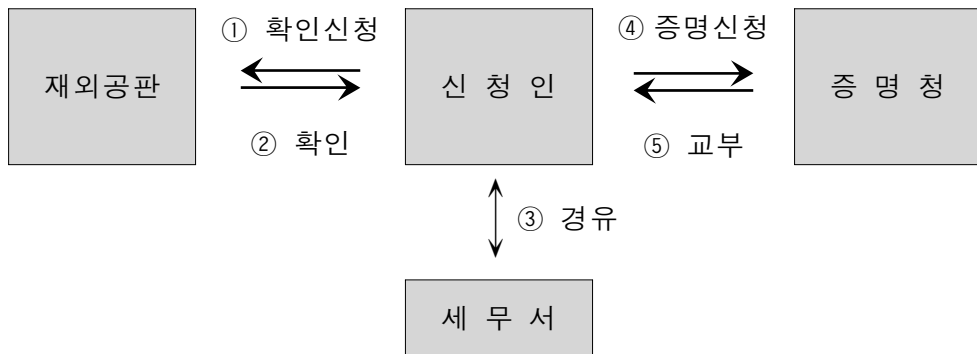
- 재외국민이 대리로 인감증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또는 법정대리인동의서)[별지 제13호서식] 을 작성한 다음, 국외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으로부터 본인의 위임(또는 동의) 사실에 대하여 확인을 받아 증명을 신청하여야 한다.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자의 인감증명서 발급절차는 내국인에 대한 증명의 대리발급절차와 동일하다. 이때 인감증명 동의서 및 위임장의 유효기간은 그 동의 또는 위임일부터 기산하여 6월이 된다.
- 위임장이 [별지 제13호서식]이 아닌 임의의 서식에 재외공관으로부터 『확인』 을 받아 제출할 경우는 위임장의 기재요건을 충족한 경우, 증명청은 긍정적으

로 검토하도록 하되, 포괄적인 처분위임장은 수리가 불가하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다. 부동산매도용 신청**

○ 재외국민이 부동산 권리이전에 사용할 인감증명을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 13호서식]의 ‘세무서장 확인란’에 증명청의 소재지 또는 부동산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인감증명서 [별지 제14호서식]의 비고란에 이전할 부동산명과 그 소재지를 기재한 후(면적기재는 불가) 인감담당공무원이 날인하여 발급한다.



## 4. 국내거소신고자의 인감신청

### 가. 본인 신청

-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 본인이 직접 인감증명 신청시 전국 어느 시·군·구, 읍·면·동 및 출장소에서나 인감증명발급이 가능하므로 방문에 의한 인감증명 절차에 따라 시·군·구, 읍·면·동 및 출장소장은 본인을 확인한 후(국내거소신고증과 여권)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이때 국내거소신고자의 인감증명서 발급신청을 받은 증명청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활용하여 인감을 신고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한 후 발급하여야 한다.

### 나. 대리인 신청

- 국내거소신고자(외국국적동포,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대리발급 제도개선
  - 외국인 및 국내거소신고자(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의 체류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는 위임장과 본인의 신분증 제출시 증명청에서는 내국인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확인하여 처리한다.
    - 제출 신분증 : 외국인등록증(외국인), 국내거소신고증과 여권(국내거소신고자)
  - 외국인, 국내거소신고자(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의 체류기간이 경과된 경우 반드시 체류기간 또는 외국인등록기간의 연장허가 등에 의하여 증의 갱신 여부를 확인한 후 증명의 발급을 처리한다.
- 인감부활 신청
  - 체류기간 경과로 적법하게 동일한 체류자격을 부여받고 재입국한 사실이 인감전산프로그램 및 출입국정보시스템의 조회를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의 인감부활 신청에 의거 인감을 부활한 후 인감증명을 발급한다. 이 경우 대리발급시에는 위 대리발급과 같은 절차에 의해 발급한다.

○ 인감의 직권말소 처리

- 체류기간이 경과된 외국인 및 국내거소신고자(외국국적동포, 재외국민)가 재입국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인감을 직권말소 한다.(주민제도팀-5493, '06.9.18)

**다. 부동산매도용 신청**

-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이 부동산 권리 이전에 사용할 인감증명을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세무서장 확인란'에 증명청의 소재지 또는 부동산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하며(주민제도팀-3844, '07.7.16 시행), 인감증명서[별지 제14호서식]의 비고란에 이전할 부동산명과 그 소재지를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이하 나머지 절차는 국내인과 동일하다.

## XIII. 인감증명서의 발급

### 1. 신고사항에 대한 확인 (영 제13조)

#### 가. 본인여부의 확인

- 인감업무담당자는 인감신청인의 본인 여부를 제출된 신분증과 개인별주민등록표, 인감대장의 기재사항들을 면밀하게 비교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 인감증명 신청시 신분확인을 위해 제출하여야 하는 증명서
  - 국내거주 국민 :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중 하나
  - 재외국민 : 여권
  - 외 국 인 : 외국인등록증
  - 국내거소신고자(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 국내거소신고증(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과 여권
- ※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의 체류기간은 거소신고증 뒷면에 표시되어 있으므로 이에 따라 체류기간 경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나. 인감의 미정비 사유 확인

- 인감증명 신청인의 신분확인인 인감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세밀히 실시하되, 인감의 특징란을 먼저 열람 후 「인감의 미정비 사유」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 신청인이 먼저 미정비된 인감을 정비한 연후에 당해 증명을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 그러나 본인이 미정비 상태의 인감으로 증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발급하는 것이 인감신고 제도의 취지에 부합할 것이다. 이때 성명이 심하게 훼손되어 있는 등의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 공신력에 문제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인감

변경신고를 하도록 행정지도하여야 한다.\

#### 다. 인감보호신청 및 해제신청사항 확인 (영 제7조의2)

- 인감보호신청과 인감보호해제신청이 동시에 있을 경우도 있으므로 두 신청사항의 접수일자를 반드시 비교·확인한 후 인감증명 발급업무를 처리하도록 한다.

## 2. 신청요건에 대한 확인 (영 제13조)

### 가. 확인사항

- 인감증명의 신청은 본인이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직접 증명청을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이때 증명청은 본인 또는 위임을 받은 자임을 확인하고 인감신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를,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의 확인 및 부동산 소재지 혹은 소관 증명청 관할 세무서의 경유(부동산 매도용인 경우) 여부를 확인한 후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나. 본인에 대한 확인

- 본인이 직접 신청한 경우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주소,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증은 제외),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여권,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자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과 여권으로 본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영 제7조제2항)
- 본인확인시스템에 의한 신분확인 (영 제7조제3항, 제13조제4항)
  - 본인확인시스템은 먼저 담당공무원이 신분증에 의한 육안대조를 한 후

그래도 신분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오른손 무인을 주 민등록 전산자료와 전자적 방법으로 대조하여 확인할 수 있다.

- 인감증명발급시 화상자료(사진, 지문)가 자동적으로 화면에 디스플레이 되도록 하였으나, 화상자료 중 ‘지문자료의 사용’시 본인의 동의를 받기위해 ‘지문열람 본인동의사항 기재’란을 입력(본인동의, 동의필)한 후 지문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주민제도팀-2325, '06.4.19)

## 나. 대리인에 대한 확인

- 인감증명 대리발급 신청을 받은 증명청은 인감증명위임장[별지 제13호 서식]의 서식에 기재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임자의 신분증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대리인이 제시한 신분증으로 위임장에 지정된 자와 일치하는가를 확인한 후, 신분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증명의 발급을 거부해야 한다.
- 또한, 증명청의 담당자가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 제출을 요구하였을 경우 대리발급 신청인이 신분증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증명청의 담당자는 증명의 발급을 거부해야 한다.(영 제15조제7호)
  - ※ 인감증명발급 대리신청시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 요구 요건(질의회신 22번 참조)
- 위임장을 반드시 본인이 직접 작성한 것인지 또는 본인의 진실된 의사에 의하여 인감증명발급을 위임받은 것인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요건에 흠이 없는 한 행정청이 인감증명의 발급을 거부할 수 없다.
- 다만, 증명청이 인감신고자의 사망사실을 알고 있거나, 의식불명으로 본인의 위임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는 등 적정한 후속절차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라. 위임장 및 동의서에 대한 확인

- 위임장과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유효기간은 위임 또는 동의일부터 기산하여 6월이므로 위임과 동의일로부터 6월이 경과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특히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에 날인된 법정대리인의 인감의 인영과 법정대리인이 증명청에 신고한 인감의 인영(증명청이 다른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활용하여 법정대리인의 인감을 확인하여야 함)이 동일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가 인감증명을 위임하여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모두 작성하여야 한다.
- 위임장의 재사용 불가
  - 이때 제출된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는 증명청에서 보관하되,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여백란에 인감증명서 발급번호를 발급일자와 함께 표시하여 위임장을 재사용하지 않도록 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유효기간 계산방법
  -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유효기간은 영 제13조제7항에 위임 또는 동의일부터 기산하여 6월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의한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초일을 포함하여 계산하되 만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까지로 한다. 예를 들어 2003. 2. 1 작성한 위임장의 유효기간은 2003. 7. 31일 오후 12시까지가 되는 것이다.

## 마. 재외국민에 대한 확인 (영 제13조제2항)

- 재외국민이 소관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한 후 본인이 직접 증명청을 방문하여 인감증명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발급을 위임하였을 경우에는 이러한 위임사실에 대하여 재외국민이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이때 재외국민이 인감증명발급을 위임하는 대리인은 국내 거주자 뿐만

아니라 재외국민이나 국내에 입국하여 등록한 외국인이라도 자격이 있다.

- 또한, 인감을 신고한 본인이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사실에 대하여 관할 재외공관의 확인을 얻어야 한다. 이때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 본인도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위임 · 동의사실 모두에 대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고 법정대리인에게 발급을 위임할 때에도 위임 · 동의사실 모두에 대하여 확인을 받도록 한다.
- 재외공관 확인시 유의사항
  - 재외공관 확인은 영사관뿐만 아니라 대사관에서도 하고 있으며, 사인공증<sup>4)</sup>과 유사하나 아래의 요령으로 식별 가능
    - 재외공관 확인 : 일반적으로 아래 확인형태(영문 또는 한글)로 작성, 확인란에 반드시 원형(지름3.5cm, 이중원형 모양, 가운데 태극마크, 테두리에 대한민국 대사관(EMBASSY OF REPUBLIC OF KOREA)의 압인 또는 고무인 날인
    - 확인사항이 의심되거나 필요시에 재외공관으로 전화 확인하여 처리

---

4) 사인공증 : 일반적인 재외공관 확인형태가 아님(확인사항, 공증사무소명, 공증인명), 원형(보통 2cm 이내)의 공증사무소 마크표시, 수입인지 미첨부, 박스안의 내용 중에 NOTARY(자격:공증인), Comm(위탁, 수수료 등) 문구 삽입

〈재외공관 확인 서식 예시〉

- 재외공관(영사관)에서 위임 또는 동의사실을 확인할 때에는 통상 아래와 같이 고무인을 [별지 제13호서식]의 재외공관 확인란에 날인하고 공증 영사가 서명 한다.

상 기 사 실 을 확 인 함.	
	서 명 _____
발행일자 :    년    월    일	
등록번호 :    년    제    호(인증)	성 명 :
수수료 : 납부필	직 위 :
	재외공관명칭 :
	소 재 지 :

※ “서명”란에는 외교통상부에 등재된 영사 서명만 사용

## 바. 세무서 경유사항에 대한 확인 (영 제13조제3항)

- 재외국민,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자가 부동산 권리이전용으로 인감증명을 신청하는 때에는 소관 증명청 혹은 부동산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의 확인 여부 및 인감증명서의 '비고'란에 이전할 부동산명 및 소재지가 표기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전할 부동산의 목록이 많은 경우에는 이를 별지로 작성하도록 하여 첨부하고, 직인으로 간인한 후 교부한다.

※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자가 부동산매도용으로 인감을 신청한 경우 세무서장 확인(주민제도팀-3844, '07.7.16)

### ○ 관할 세무서 경유 사유

- 부동산 매도 등에 있어서 매도자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등의 각종 과세 자료의 사전 확보로 국내 미거주에 따른 탈세 또는 과세수납의 어려움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 따라서 매도와는 달리 과세대상이 거래상대방이 되는 증여, 상속의 청구는 세무서를 경유할 필요는 없다.
- 증명발급은 본인이 직접 발급받을 경우 여권을 소지하고 전국 어느 증명청이든 신청하면 되고, 대리인이 발급받을 경우 본인의 위임장(재외공관 경유)과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증명청에 신청하면 된다.

### ○ 세무서장 확인서상의 '부동산 소재지'정정권자

- 세무서장 확인서 [별지 제13호서식]에 기재된 부동산 종류와 소재지를 인감증명서 [별지 제14호서식]'비고'란에 그대로 기재하여 발급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 세무서장 확인서의 부동산 소재지는 「주소」가 아니므로 민원인의 요청에 의해 정정될 사항이 아니라 세무서장의 확인에 의해 정정처리 되어야 하며, 세무서장 확인사항을 신청인이 인감증명서 [별지 제14호서식] '비고'란에 그대로

로 기재토록하고 담당자가 사인을 날인하여 발급토록 하되, 이를 인감증명서의 ‘비고’란에 별도로 표시하여 발급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예시 : ‘비고’란에 자체적으로 제작한 ‘세무서 경유필’ 등의 표기 행위 등) (주민제도 팀-365, '05.4.18)

### 3. 인감증명서의 발급 (영 제13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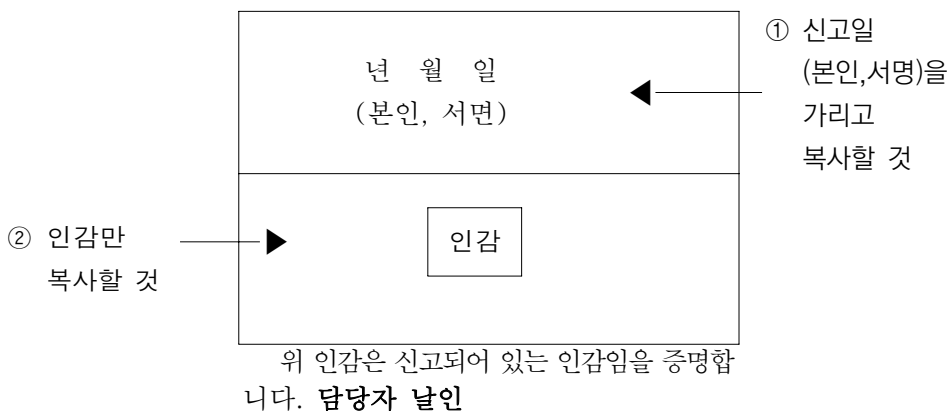
#### 가. 발급요령

-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인감을 증명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증명청은 복사방지를 위한 특수용지를 사용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인감증명서[별지 제14호 서식]를 출력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인감증명서의 인영은 붉은 색의 인주에 문혀 직접 날인하는 실제의 인감이 아니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수록된 인감화일을 흑백프린터기로 출력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하게 된다.
-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인감증명발급을 하지 못하는 경우
  -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인감증명을 발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인감신청인이 인감신고인의 소관 증명청을 방문하여 인감증명을 신청해야 하며, 당해 증명청은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한 후 인감대장 제1쪽을 복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 이때 인감증명서가 「인감증명서」로 표기되지 않고 「인감대장」으로 표기되어 발급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증명하는 인감은 인감대장 제2쪽의 신고인감이므로 이를 제1쪽의 인감증명서 이면에 복사하고 하단에 「위 인감은 신고 되어 있는 인감임을 증명합니다.」라는 증명인을 기재하여 담당자가 날인한 후 발급한다.
  - 이 경우 주소이동사항은 인감대장을 복사하여 발급하는 관계로 앞면에 있

는 주소지로 발급할 수 있으며,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전체 주소  
지로 발급하여야 한다.

-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외국인, 재외국민, 재외동포법에 의하여 신고한  
재외동포의 경우에는 국내체류지, 최종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 국내거소지를  
주소이동사항란에 등재하고 신고한 날을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이때 재  
외국민의 경우에는 출국일자를 출국일자가 불명일 경우에는 주민등록 공부  
정리일을 기재하여 발급한다.
- 또한 재외국민의 인감이 등록기준지 관할 증명청에 신고 되어 있는 경우에  
는 최종주소가 불명인 관계로 인감증명서 주소이동사항란은 “빈란”으로 발  
급하게 된다. 이때 재외국민이 여권번호와 함께 생년월일의 기재를 요청할  
경우 여권번호 기재란 하단의 여백에 ( )표기를 하여 발급하여도 무방하다.
- 전입일에 대한 확인란은 증명청의 담당자가 별도의 날인을 하는 것이 아니  
라 인감전산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출력된다. 그러나 수기의 방법으로 발급  
하는 경우에는 담당자가 사인 날인 후 발급한다.

### <인감대장 제2쪽을 복사하여 발급하는 경우의 예시>



2008. 8. 27

경상남도 00시 00동장 인

- 외국어로 표기된 인감증명서 발급
  - 인감증명서는 인감증명법 시행령에서 규정된 서식으로 발급함이 원칙이나 필요에 따라 외국어를 병기하여 발급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 다만, 인감증명제도가 우리나라, 일본, 대만 등 한자문화권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요구자의 국적이 서양문화권인 경우에는 공증제도를 활용토록 행정지도하고, 일본·대만인 등의 경우에는 한자를 같이 표기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체류기간 만료로 출국한 외국인에 대한 인감증명발급 금지
  -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출국한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을 회수하고 외국인등록표를 정리하므로 법 제3조제3항에 규정된 외국인(출입국관리법에 의하여 외국인 등록을 한 자)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증명을 발급할 수 없다.(내무부 지도 151-16597, '77.12.6)
- 교도소에 수감 중인 재외국민의 인감증명발급 요령
  - 재외국민의 인감증명 대리발급 신청시 재외공관의 확인과정을 거치게 한 것은 본인의 위임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이다.
  - 국내 교도소에 수감 중인 재외국민은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을 수 없으므로 위임장의 재외공관 확인란에 “인감증명 신청위임을 홍길동에게 하며 이는 본인이 자필하였음”이라는 표시를 한 후 현재 수감중인 교도소책임자의 확인을 받도록 하면 본인의 위임 의사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주민 07000-321, '96.5.31)
- 외국인·국내거소신고자의 경우 전산인감대장의 ‘출입국정보’를 통한 조회
  - 열람
  - 외국인, 국내거소신고자가 인감증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의 유지여부를 전산인감대장의 ‘출입국정보’를 활용하여 그 자격상태를 확인 후 인감증명을 발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전산인감대장의 ‘출입국정보’화면에서 대상자가 표출되는 경우에는(출국, 여권유효기간 종료, 체류기간 만기 등에 대한 확인이 가능함) 재입국허가 상태, 여권 유효기간 연장,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적법한 과정을 밟아 그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자인지 확인 후 처리하여야 한다.
- 자격상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시 인감대장의 인감특징란에 “자격만료의 사유”와 “발급중지”를 입력하여 신분정리를 안내 할 수 있도록 하고, 자격 유지 여부에 대한 정보가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출입국정보’를 통해 자격의 갱신이 확인 되는 경우에만 인감증명을 발급하도록 한다.

## 나. 증명의 용도

- 부동산매도용을 제외하고는 증명청에서 인감증명서의 용도를 확인하지 아니한다. 다만, 부동산매도용에 대하여는 매수자 인적사항(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주소)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용도의 변조방지 및 증명발급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성명란 첫자와 주소란 마지막 말미에 담당공무원이 날인한다. 이때 유의하여야 할 것은 부동산매도용이 아닌 증명을 발급함에 있어서는 증명청이 부동산 매수자란중 성명란에 「빈란」임을 반드시 표시하고 첫 자와 말미에 담당공무원이 날인한 후 교부하여 증명의 악용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한다.
- 자동차 권리이전 용도로 인감증명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부동산매도용이 아닌 일반용으로 발급한다.
- 위임장의 「사용용도」란을 기재하지 않았을 경우
  - 위임장의 사용용도란은 위임의사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인 만큼 사용용도가 미기재된 경우에는 보완토록 행정지도하고, 위임자와 위임받은 자의 인적사항, 위임일자 등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발급토록 하여야 한다.

- 위임을 받은 자의 신분확인이 불가능하고 위임장의 유효기간이 6월을 경과하는 등 주요한 흠이 있을 경우에는 발급을 거부해야 한다.(주민07000-623, '96.10.26)

#### 다. 증명의 유효기간

- 인감증명법령상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의 동의서가 위임 또는 동의일부터 기산하여 6월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증명자체의 유효기간에 관하여 따로 규정한 바는 없다.
- 부동산등기규칙(대법원규칙) 등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개별 법령에서 발급된 인감증명의 유효기간<sup>5)</sup>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인감증명청과는 직접적 관계가 없는 사항이다.
  - 다만, 국민에 대한 편의제공 차원에서 대법원규칙 등으로 정하여져 있는 유효기간을 사전에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 4. 인감증명발급대장의 작성

-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인감증명발급대장[별지 제15호서식]에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수령인란에 본인인 경우에는 서명 또는 무인을 대리인인 경우에는 무인을 받은 후 교부해야 한다.
  - 수령자가 본인인 경우, 서명 또는 무인에 대한 선택권은 수령인에게 있으므로 무인을 우선하여 강요할 수 없으며, 서명 또는 무인을 대신하는 인감도장의 날인도 불가하다. 또한 미성년자, 노약자인 경우로서 서명이 곤란한 경우에는 무인을 권고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한다.

5) 부동산등기규칙(대법원 규칙) 제55조 :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을 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의 것으로 정함.

○ 인감증명발급대장 관리방법 개선

-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증명인, 증명신청인란에 해당자의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만 표기하도록 한다.
- 인감증명발급대장의 효율적 사용을 제고하기 위해 인감증명발급대장의 각 용지마다 하단의 통계란을 인쇄하지 않아도 무방하다(필요시 전산대장을 활용 첨부).(주민제도팀-1760, '05.7.1)

○ 발급오류 · 발급취소에 따른 발급대장 처리요령

- 발급오류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라도 원칙적으로 발급번호 수정은 불가하다.
- 인감증명서 발급오류나 발급 후 취소를 하는 경우에는 당일 중에만 처리가 가능하며, 발급대장의 「발급통수」, 「교부통수」를 확인 후 「교부통수」를 전산으로 수정하고, 비고란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관리한다. 미교부 통수는 다시 전산으로 발급하므로 다음 칸에 이어 출력토록 한다.
- 또한 발급오류나 발급 후 취소에 의거 잘못 발급된 인감증명서는 신청인의 면전에서 즉시 파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감증명발급대장 작성 예시〉

인 감 증 명 발 급 대 장

결 재		발급 번호	발 급 년월일	증 명 인	증명신청인	발급 통수	부동산매매용 (매수자인적사항)	수령인	비고
담당	담당자			성명 · 생년월일	성명 · 생년월일				
		126	'03.3.26	주소	주소	2	무	안전해	
				안산해	안전해				
				47, 2. 17	52, 4. 8				
				부산. 연제.	연산동1245				

※ 인감증명을 2통 이상 발급하는 경우 발급통수란의 기재는 각각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위 사례와 같이 신청당시 한 칸에 발급통수를 기재하여 관리한다.(인

감증명서 발급시 용도지정 제도 폐지로 행정의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각각의 기재는 지양)

- 만일 이미 기재한 발급통수를 정정할 경우에는 반드시 정정사항에 대하여 인감신청인의 서명·무인을 받도록 하여 발급통수 정정에 대한 근거를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비고란을 활용할 것)

## 5. 인감증명 대리발급사실 통보 (영 제13조제6항)

- 인감증명의 허위신고 또는 대리발급에 따른 인감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인감증명을 발급한 기관은 우편, 전화,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본인에게 대리발급 사실을 통보하여 줄 수 있다.
- 특히, 문자전송(SMS) 방식에 의한 인감증명 대리발급사실통보서비스는 2006년 1월부터 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단계적으로 도입 중에 있으며, 시·군·구 단위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본인이 타 시·군·구로 진출시 SMS 서비스는 직권으로 해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만 대리발급사실을 통보받을 수 있다.
- 세부적인 통보방법, 통보절차, 본인의 휴대폰 전화번호 접수절차 등은 대리발급사실통보서비스를 시행하는 자치단체별로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운영토록 하여야 한다.
- 문자전송(SMS) 대리발급사실통보서비스 운영시 준수사항
  - 휴대폰 문자전송 서비스를 운영하고자 하는 시·군·구에서는 시행계획서를 첨부, 시행예정 1개월 이전에 시·도를 경유하여 문서로 대리발급 자료 연계 요청을 하여야 한다.
  - 문자전송에 의한 대리발급사실통보서비스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문자전송 대리발급사실통보서비스를 시행하는 관할 시·군

- 구내 주소가 있는 인감신고인으로서 SMS 문자전송서비스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 서비스함을 원칙으로 한다.
- 문자도착에 대한 법적 · 행정적 책임은 증명청에 없음을 신청서상에 명시하여 시 · 군 · 구청에서 운영한다.
- 타 증명청에서 대리발급한 경우 주소지 관할 증명청에서 문자를 전송한다.
- 전송문안은 다음을 준용한다.

< 전송문안 예시 >

2006. 1. 1 대리인 000님이 역삼2동에서 인감증명3통 발급  
- 인감증명발급기관 전화번호 -

## 6. 인감증명발급확인시스템 (법 제12조의2, 영 제14조)

- 시장 · 군수 · 구청장이나 읍 · 면 · 동장, 출장소장은 인감증명을 제출받은 자(은행, 법원 등 수요기관)가 발급사실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자민원 창구(대한민국 전자정부 : <http://www.egov.go.kr>)를 통하여 인감증명의 발급사실에 대한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 발급기관, 발급일자, 주민등록번호, 발급번호에 의하여 발급사실을 확인하여 줄 수 있다.
- ※ 성명, 주소 등은 발급사실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인감증명발급확인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하는 수요기관은 기본적으로 민원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인감증명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인터넷 접속을 통하여 당해 인감증명서상의 「발급일자, 주민등록번호, 인감증명발급사실확인용 발급번호, 발급기관」 등을 통해 발급기관에서 발급한 사실과 ‘일치함’과 ‘일치하지 아니함’의 2가지 형태로 결과를 확인받을 수 있다.

## 7. 사망자 인감의 허위 대리발급사실 인지에 따른 수사 의뢰

- 사망자의 인감 허위발급으로 인감사고 발생시(미수 포함) 신속한 조치가 가능토록 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가 강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06.9.25 시행)
  - 사망자 허위인감 대리발급에 따른 수사의뢰는 발급기관에서 처리한다.
  - 발급기관의 수사의뢰가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감대장 보관 증명청에서는 사망신고서 등에 의하여 범죄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지체 없이 사망자 인적사항, 사망신고 일자 등을 공문으로 발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발급기관에서는 범죄지 관할(발급기관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한다.<sup>6)</sup>  
(주민제도팀-5593, ’06.9.21)

## 8. 인감증명 위·변조 등 인감사고 예방

- 법 제11조제1항에 「증명청은 인감을 신고한 자의 사망사실을 안 때에는 직권으로 그 인감을 말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인감담당공무원은 주민의 사망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즉시 인감을 직권말소 조치한 후 그 사실을 가족에게 통보해야 한다.
- 정확한 인감대장의 관리를 위하여 이장이나 통반장을 통해(대면 및 유선 활용) 관내 주민의 사망유무에 대한 확인을 수시로 하는 등 주의를 기울여 사망한 자의 인감증명이 발급되지 않도록 하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매화장시설을 운영하는 자치단체에서는 매화장신청자의 인적사항이 관할 주

---

6) 관련법령 : 형사소송법

제4조(토지관할) ① 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한다.

제234조(고발) ① (생략)

②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소지로 신속하게 통보가 될 수 있도록 매화장시설에 공문협조를 구하고, 매화장신고서를 접수한 증명청에서는 이를 근거로 사망한 자의 인감을 신속하게 말소처리 한다.(주민과-3201, '04.8.20)

《 인감증명발급시 유의사항 》

- 사망자 허위발급방지 안내(민원창구에 안내문을 민원인이 볼 수 있도록 게시)  
안내문 예시) “사망한 자의 위임장을 허위로 작성하여 인감증명서를 신청하거나 발급받은 자는 ‘형법’제231조 내지 제2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인감대장상의 인감의 보호 및 해제신청 • 인감 정비자 여부(특정란 참조)  
확인 철저
- 위임자, 피위임자, 법정대리인의 신분을 공부상 • 전산정보처리조직의 대조  
확인 철저
- 재외국민,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자가 부동산 권리이전에 사용할 인감증명  
발급신청시 증명청소재지 또는 부동산소재지 관할 세무서장 사전 경유  
여부 확인
- 부동산 매도용의 경우 매수자의 인적사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은 발  
급신청은 보완토록 조치(주소는 번지까지 정확하게 기재)
- 가등기, 증여 등에 사용하는 인감증명은 “부동산매도용”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 위임장 또는 동의서 1매로 2부 이상 인감증명을 신청할 경우 발급통수관을  
확인 후 발급

## XIV. 인감증명의 거부

### 1. 인감증명발급을 거부해야 하는 경우(영 제15조)

- 증명청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인감증명의 발급을 거부한다.
  - 인감증명의 발급을 신청한 대리인이 17세 미만일 때
  - 인감증명의 발급을 신청한 자의 신분확인이 곤란한 때
  - 영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의 보호를 위하여 특히 요청한 사항에 위반한 때
  - 금치산자 본인이 직접 인감을 증명 받고자 할 때
  -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인감을 증명 받고자 할 때
  -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이 말소된 때
  -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

### 2. 인감증명발급 거부시 유의사항

- 인감증명 신청인의 신분확인이 소지한 신분증이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활용한 화상자료(사진, 지문)를 이용하여 동일인이 아니라는 확신이 드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운용한다(증명서 발급을 거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민원책임관의 결재를 득한 후 민원인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는 것도 한 방법임).
-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의 기 신고한 인감의 말소정리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증명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FAX 전송, 전화확인 등 가능한 방법을 통하여 민원인의 요구가 적극적으로 해소되도록 한다.
- 법 제11조의 말소된 인감이 있는 경우라 함은 주민등록말소(직권·신고)로 인한 인감말소자 및 인감의 말소를 요청한 경우에 해당하며 말소된 인감을 “직권부활, 신고부활”을 하는 때에는 즉시 인감증명의 발급이 가능하다.

## XV. 인감증명 관계서류의 보존 및 관리

### 1. 인감증명 관계서류의 보존 (법 제10조, 영 제17조)

#### 가. 보존기간

- 일반적으로 공문서의 보존관리는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령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인감증명제도와 관련한 문서의 보존기간은 인감증명법 제10조 및 영 제17조에서 다음과 같이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다.
- 영구 : 인감대장, 인감관리대장, 재외국민 인감신고기록대장(기존의 인감색인대장 포함)
- 10년 : 인감증명발급대장, 각종 신고서, 확인서 및 동의서, 인감신고사항 통보서 및 회보서(기존의 인감대장이송부, 인감대장수령부 포함),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그 밖의 인감관련 대장(전산출력물 관련대장 등)

#### 나. 보존관리 책임자

- 총 책임자 : 증명청의 장
- 정책임자 : 민원담당
- 부책임자 : 인감업무담당자

### 2. 인감관련 서류의 열람 제한 (영 제18조)

#### 가. 열람 가능자 및 열람방법

- 인감대장 또는 인감에 관한 서류는 인감신고를 한 본인 및 법령에 의하여 권한이 부여된 자를 제외하고는 열람시켜서는 안 된다.

- 법령에 의하여 권한이 있는 자 일지라도 권한 있는 기관 소속임을 증명하는 신분증과 소속기관의 공문(또는 협조문)을 제출한 후 열람대상, 열람신청인, 열람내용을 열람대장[별지 제16호서식]에 기재하고, 증명청의 건물에서 관계 공무원의 입회하에 열람하게 할 수 있다.

《 인감대장 또는 인감에 관한 서류 열람 가능한 자 》

- 인감신고인(본인)
- 법령상 권한이 있는 자(예시)
  - ① 사법경찰의 직무를 수행중인 자로서 신분증과 소속기관장 협조문을 지참한 자
  - ② 관할 검사장이 사법경찰관리로 지명한 지명서를 소지한 공무원이 공무집행을 위해 요청한 때
  - ③ 법원에서 소송관련 자료에 필요하여 열람할 자를 지정하여 공문으로 요청한 때
  - ④ 관할 검찰청 검사장의 지명서를 소지한 세무공무원이 공무집행을 위해 요청한 때

**나. 인감관련 서류의 열람시 유의사항**

- 열람목적은 인감과 관련되어야 하며, 법령상 권한 있는 자의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협조공문이 필요하다.
- 사망한 자에 대한 열람권자는 선순위 상속자(배우자, 자녀)이며, 그 이외에는 본인의 이익을 구하고자 하는 관계서류를 제출하는 경우(권리구제, 소송 등)에는 열람을 허용한다.
- 열람 후 복사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권리구제, 소송 등 본인의 이익을 구하고자 하는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검토 후 민원편의 차원에서 복사본으로 제공

할 수 있다.

- 다만, 인감관련 사항에 한해 제공하여야 하며, 원본대조필 등 공공기관이 확인(증명)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 지문과 보호(해제)신청 항목은 제공금지(주민제도팀-968, '06.2.20)

#### 다. (구)인감자료에 대한 열람

- 효력이 말소된 당시의 증명청에 보관되고 있는 (구)인감자료는 (구)개인별주민등록표에 통합 관리되고 있으나 주민등록표 관리 자료가 아니므로 개인별 주민등록표에 의한 주민등록 항목(정보공개청구 등)으로 제공될 수 없다.(주민제도팀-968, '06.2.20)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참조(시행령 서식1호)

#### 라. (구)개인별주민등록표 서식중 「인감대장」의 범위

-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2-1호서식 ('78.3.25 신설)에서 열람의 대상이 되는 인감대장의 범위는 「<19>인감」부분이다.
- 그러나 '신고사항의 변경신고(성명, 생년월일, 주소등)'조항이 존재하고(법 제8조), 인감신고 등 각종 신고·신청시 성명주의를 채택하였던 점(영 제3조)을 고려하여 볼 때 (구)개인별주민등록표상의 인적사항(성명, 주소이력, 주민등록번호)도 쟁송 등 본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열람의 대상에 포함된다.(주민제도팀-4755, '06.8.18)

## XVI. 수수료

### 1. 수수료 종류 및 금액

○ 인감증명발급 : 통당 600원

○ 인감변경신고 : 회당 600원

※ '03.3.26 이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바에 의해 수수료 조항을 운영한 관계로 증명청에 따라 각기 다른 수수료를 적용하였다.

### 2. 수수료 징수

○ 인감증명발급 수수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를 인감증명서에 첨부하여 소인(천공 등)하거나 인증기를 사용한다.

### 3. 수수료의 귀속

○ 징수한 수수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 4. 수수료의 면제 (영 제19조제2항)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인감증명 신청이 있을 때에는 관련문서(공문서)를 제출받아 확인을 한 후 인감증명 수수료를 면제하여 발급하도록 한다.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첨부서류

로 제출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 ② 국가를 등기권리자로 하는 등기신청에 첨부서류로 제출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④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 ⑤ 관계 법령에서 인감증명정보 자료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
  - ⑥ 「독립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등과 유족(선순위자에 한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 ⑦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한다)이 신청한 경우
  - ⑧ 「고엽제후유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 환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 ⑨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군인 등이 신청하는 경우
  - ⑩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 ⑪ 법 제5조에 따라 신고되는 성명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인감을 변경하거나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개명신고하고 인감을 변경하는 경우
- 수수료 면제표시는 인감증명서에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의한 수수료 면제” 표시를 하여 발급하도록 한다(고무인 등의 활용도 무방).
- ※ 인감증명발급대장의 비고란에 수수료 면제 표시를 별도로 기재한다.

## XVII. 담당공무원의 보험 · 공제 가입

- 증명청은 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감담당공무원의 보험(신원보증 보험을 포함한다)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영 제20조) 이 경우 보험액의 한도 · 가입조건 · 범위 등 기타사항은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도록 한다.(주민12130-93, '03.1.27 표준조례안 시달)

## XVII. 인감신고

### 1. 내국인

#### 가. 주민등록상의 성명과 상이한 인감으로 신고·발급된 인감증명서의 효력

- 인감증명법에 의한 각종 신고는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성명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인감증명법 시행령 제3조) 인감신고시에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성명과 상이한 인감으로 수리하여서는 안 되며,
- 한자로 조각된 인장의 경우에서와 같이 육안으로 보아 원래 한자와 비슷하여 착오로 인감을 수리,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였을 경우 인감증명발급절차에 하자가 없는 한 그 효력은 부인할 수 없다고 보며, 그 효력여부는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기관에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인감도장에 길함을 기원하는 의미로 조각하는 통상의 조각은 성명인식을 저해하지 않는 정도여야 하며, 사람의 ‘명’으로 쓰이는 글자는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나. 유아의 인감신고시 법정대리인 문제

- 인감증명법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한 미성년자의 범위는 민법에서 정한 만20세 미만인 자를 말하므로 유아도 미성년자의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음에 따라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인 친권자(부 또는 모)는 유아인 미성년자의 인감신고 및 인감증명발급의 동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 다.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의 인감 서면신고 방법

-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서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가 인감을 서면

신고 하는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법정대리인<sup>7)</sup>의 동의를 얻어 서면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이때 서면신고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항을 참조하여 서면신고서[별지 제9호서식]에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라. 주민등록 직권말소 사항의 인감대장 기재란 문의

-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2조제5항에서 직권말소시에는 인감대장 비고란에 직권말소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며, 현행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인감대장의 유의사항 2호에 직권 조치 사유 등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직권말소 및 재등록(재신고)사항을 인감대장 제1쪽 주소이동사항란과 제2쪽 비고란, 인감관리대장에서는 비고란에 직권말소 및 등록(직권부활) 관련사항을 기재하여 정리한다.

## 마. 경찰서의 유치장에 있는 동안 인감 서면신고 가능 여부

- 가능한 쪽으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형이 확정되면 과거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된 때로 기산하여 형을 계산하기 때문이다.

## 바. 본인의 직함(직위 등)이 조각된 인장의 신고 여부

- 인감으로 신고할 수 있는 인장은 가족관계등록부나 주민등록표에 있는 글자

---

### 7) 한정치산자 • 금치산자의 법정대리인

- 한정치산자나 금치산자의 신고는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이나 가정법원에서 취급하는 가사소송 관련 업무로 선고가 확정되면 동시에 '후견인'을 선임하게 되며,
- 이 후견인을 법정대리인'으로 칭하며 후견인은 배우자, 직계혈족, 3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위로 후견인이 된다.

이외의 조각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즉, ‘공인중개사’, ‘변호사’등의 직함을 포함하는 인감의 신고는 불가합니다.

#### **사. 인감도장의 성명이 가족관계등록부 등과 다른 경우 처리요령**

- 인감대장상의 성명이 주민등록표,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성명과 다른 경우에 유효하게 수리된 인감증명일 경우라도 증명의 발급은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발급되는 인감증명의 성명은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성명에 의하여야 하며, 증명청의 담당자는 이를 확인할 의무가 있으므로 증명청의 담당자가 상이함을 인지하였다면, 인감의 변경신고를 처리한 후 발급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 **아. 우체국에서 인감대장 이송시 분실된 경우 처리요령**

- 우선 관할 우체국으로부터 ‘문서’로 답변을 받아놓고, 민원인께 인감의 재신고가 필요하다는 사항을 안내(재신고 기간 : 설정)하고, 본인의 동의를 받아 인감대장을 재작성 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인의 출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인감대장의 무인날인이 없는 상태이므로 인감증명의 발급은 불가합니다.

#### **자. 인감증명발급대장 등 보존기간이 경과(종료)한 문서의 열람**

- 인감증명발급대장에 대한 열람이 가능한지의 문제는 인감증명제도상의 문제라기보다는 기록물관리에 관한 문제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10년이 지난 문서일지라도 기록물평가심의회 심의를 거쳐(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시행령 제43조) 폐기로 결정되지 않았다면 다시 재분류될 수도 있고, 이에 의거 보존기간이 재검토 될 수도 있으므로 공부가 폐기되기 전까지는 열람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자. 정신질환·치매 등 질병을 앓고 있는 자의 인감신고

- 정신질환자(정신장애자)에 대하여 현행 인감증명법령에서는 별도의 규정(예시 : 한정치산자, 금치산자)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일반인과 다르게 처리하는 것은 잘못이며, 치매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인감신고시 인장과 신분증이 제출되면 통상의 인감신고 절차에 의해 처리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 다만, 의식불명자, 뇌사자 등 의사능력이 없다는 상황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법정후견인 선임을 통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 카. 휴가 중인 군인의 인감신고 방법

- 징집되어 영외로 나오지 못할 경우에는 ‘서면신고’ 방법으로 인감신고를 하여야 하며, 징집중인 군인이 영외로 나온 경우(휴가 등)에는 본인이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과 인감에 사용될 인장을 제출하고 인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타. 컴퓨터(레이저빔 이용 등)로 판 도장의 인감신고 수리 가능여부

- 인감도장으로 등록되면 그 도장은 유일무이하게 그분의 재산권 행사에 사용되도록 보호받고 타인에게는 유효하지 않아야 하므로 컴퓨터로 제작된 동일한 도장의 인감신고 수리는 허용할 수 없습니다.

#### 파. 인감대장이 분실된 자의 전·출입 발생시 재신고 처리요령

- 신고된 인감대장이 분실된 상태에서 전·출입이 일어난 경우 인감증명 재신고를 요청해야 하는 기관은 전입지 증명청입니다.
- 다만, 전출지 증명청에서는 공문으로 인감분실의 사유, 신고인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 등을 전입지 증명청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전입지 증명청의 담당자는

상당한 재신고 기간을 정하여 인감분실에 따른 재신고를 구두, 전화 또는 공문 등의 방법으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인감의 재신고시 신고된 본인이 출원해 주시지 않을 경우 인감대장에 무인날인, 즉 확인(본인 동의)이 없는 상태이므로 인감증명 발급을 할 수가 없으며, 따라서 본인의 동의를 받게 되기까지 인감화일의 인감의 특징란에 “본인의 재신고(사유 : 인감대장의 분실) 요청 중으로 발급을 일시 중지함(일자, 담당자)”으로 입력(기재정리)하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 본인의 동의를 있게 되면 위 내용은 즉시 삭제처리 하여야 하겠습니까.

## 2. 재외국민 및 외국인(외국국적동포 포함)

### 가. 재외국민 인감신고시 이중신고 여부 확인방법

-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서 ‘재외국민의 인감신고를 받은 최종주소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은 재외국민이 인감을 신고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이를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지체 없이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통보하여야 하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등록기준지 관할 증명청은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인 시·구가 아닌 출국 전 내국인으로서 인감신고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읍·면·동입니다.
- 재외국민의 경우 크게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와 국내거소신고를 한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기준지에 인감신고여부를 확인하고, 국내거소신고를 한 경우에는 최종주소지와 등록기준지에 이중신고여부를 확인하면 됩니다.

## 나. 최종주소지가 불분명한 재외국민의 인감신고기관

- 신고인이 최종주소지를 모르는 상황에서는 주민등록번호의 조회(전산자료 활용, 지역번호코드 등으로 추적)를 통하여 최종주소지를 찾으려 하고, 그래도 최종주소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록기준지 관할 읍·면·동에 인감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 다. 인감제도에서 ‘재외공관 확인’이 갖는 의미

- 내국인의 경우 본인확인의 방법으로 ‘본인의 신분증’을 제출토록 하여 증명청의 담당자가 확인하는 절차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재외국민의 경우 본인확인에 한계가 있어서 ‘본인의 신분확인’을 ‘재외공관의 확인’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라. 재외공관 확인시 확인마크가 사무편람과 다른 경우

- 해외에 소재하고 있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인감증명 위임장에 확인을 하는 마크는 통상적으로 거의 같은 모양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나, 일부 재외공관의 경우에는 일부를 생략하는 경우(고무인 미사용 및 수기작성 후 서명 등의 방식)가 있으므로 인감증명사무편람상에 명기해 놓은 항목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면 발급하는 방향으로 운영하시기 바라며, 의심스러운 경우 시·군·구를 통하여 재외공관으로 직접 확인하여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마. 외국인 인감신고자가 완전출국 후 재입국한 경우

- 완전출국 후 재입국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규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그 이유는 외국인 신분으로 우리나라에 입국시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체류 목적에 따라 체류자격이 부여되고 그에 의한 권리 의무가 다르기 때문에 신규

로 등록하여야 하나 체류자격을 동일하게 부여받았다면 부활하여 사용합니다.

#### **바. 미성년자인 외국인(시민권자)의 인감신고 가능 여부**

- 미성년자인 외국인의 인감신고도 가능하지만 절차가 내국인의 미성년자와는 좀 상이합니다. 우선 미성년자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 또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등록이 되어있는 자 이어야 하며, 미성년자의 부 또는 모가 가정법원으로부터 법정후견인으로 지정을 받아 인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사. 외국인 인감신고시 영문으로 된 인장의 수리여부**

-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3조에 「출입국관리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을 한 자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증명청에 보관·관리되고 있는 외국인등록표상에 기재된 성명과 동일하게 표기된 인장을 인감으로 수리하여야 할 것이나 급격히 늘어나는 외국인체류자가 경제활동상 필요한 인감을 신고하고자 하나 영문성명을 전수 인장으로 표기하기가 어렵다는 민원이 제기되어(1994년), 그 개선방안으로 외국인등록표로 신분확인이 가능한 외국인의 경우 한글발음 표기를 하거나 영문표기인 경우 성은 그대로 그 명은 축약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감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아. 외국인등록표상에 기재되지 않은 한문성명의 인감 수리 여부**

-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외국인등록표를 작성할 때 「출입국기록관리 및 전산업무처리지침」에 의거 일본이나 중국계홍콩, 중국인(화교 포함)의 성명표기시

한자성명을 괄호 속에 병기하도록 하여 외국인등록표에는 수기로 기재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전산으로 처리하는 외국인등록표의 한문성명 표기에 여러 가지 곤란한 점이 있어 한문을 한글성명으로 입력, 관리하고 있으므로 동양권의 한문사용이라는 독특한 사정을 감안, 본인의 한글성명과 같은 한문으로 된 인장을 인감으로 신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리하시기 바랍니다.

## XVIII. 인감증명발급

### 1. 내국인

#### 가. 인감증명발급 대리신청시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 요구 요건

- 인감증명발급기관은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후단에 따라 위임장의 진위 여부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나 사유가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인감증명으로 인한 부정행위 발생의 방지와 그 밖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인감증명발급을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법령해석 : 법령해석총괄과-868, '08.6.18)

#### 나. 법정대리인 변경 여부

- 최초 인감신고시 모의 법정대리인 신고가 유효하게 수리되었다면 발급시 법정대리인을 부로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혼 등에 의한 친권자 지정 등 중대한 결격사유가 발생했다면 당연히 법정대리인을 변경해야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변경 없이 모의 동의서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 다. 행불 신고된지 1년 지난 남편의 인감증명발급 대리신청 가능 여부

- 행불신고 1년 경과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가출신고 또는 행불신고 접수처리된 구체적 문서) 증명청이 객관적으로 인지한 이상 인감증명발급 대리신청은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행불자 등의 재산관리를 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 제도'가 있으므로(민법 제22조) 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안내하는 쪽으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 라. 교도소 수용자의 인감증명발급 대리신청 요건

-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위임장을 수용자 본인이 자필기재하고(위임받는 자와 위임자란), 본인의 우무인 날인, 입회교도관의 ‘본인이 맞는다는 의미’의 무인 증명, 교도소장 등 기관장의 직인 날인 등의 요건이 되어있다면 대리발급이 가능하며,
- 한 가지 다른 방법은, 수용증명서를 첨부하되 수용증명서의 여백에 신청인을 본인으로 기재하고, 인장이나 무인을 날인하고, 사용용도를 ‘인감증명 신청’이라는 의사표시가 되어있으며, 이를 위임장과 함께 제출하는 경우 발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복역에 따른 별도의 신분증 제출행위는 불요합니다.

## 마. 인감증명발급 대리신청시 위임장의 ‘기재’는 수기라는 법적근거

- 위임장은 향후 쟁송 등 발생시 수권 대리행위로서의 법률행위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유일한 정황서증으로서 법원에서 채택될 수 있는 서류이므로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명기된 바와 같이 ‘기재’이어야 하며, 기타 워드 및 프린터, 복사 등으로는 수리가 불가합니다.

## 바. 본인임을 가장한 대리발급 미수자에 대한 처리

- 인감증명 대리발급 관련 인감증명신청서 및 위임장 등을 증명청을 속이고 행사할 목적으로 제출하였다면 형법 제231조에 의한 범법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공·사문서 위조죄의 경우 미수범까지 처벌이 가능하므로 증명청의 공무를 방해하고 그 행위가 심히 중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 사. 위임장의 정정날인이 가능한지 여부 및 보완요령

- 위임장의 주소 전체가 틀리다면, 당연히 위임장을 재작성하여 발급토록 하여

야 하겠으나, 일부 내용이 틀리거나 부족한 경우(예시 : 아파트의 동호수는 같으나 명칭이 틀린 경우 등)에는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정정토록 하고, 위임장에 날인된 인영으로 몇 자 정정처리 기재 및 날인 후, 제출받으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임장은 향후 소송 등의 중요한 정황증거가 되므로 증명청의 담당자가 정정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 **아. 사망일자와 동일일자 대리발급시 허위인감의 고발 여부**

- 대리발급 일자와 사망일자가 동일한 일자라면 사망 직후 허위에 의한 인감증명의 대리발급이 가능하므로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하여야 할 사항이며, 수사의뢰시 대법원 판례 73도 1138, '73. 10. 23 선고를 근거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수사의뢰시 해당 인에게도 허위여부에 대한 판결은 '법원 등 권한 있는 기관'의 결정에 의할 것이고, 공무원은 법적으로 반드시 고발토록 되어있음을 안내하시기 바랍니다.(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

#### **자. 인감증명발급 대리신청시 신분증 사본의 제출 가능 여부**

- 인감증명법 제12조제1항에 의거 인감증명 신청시 신청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동 시행령 제13조에 의거 제출되는 신분증은 신청서로 의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그러므로 인감증명 신청서를 사본으로 제출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신분증 사본의 제출은 불가합니다.

#### **차. 인감증명발급시 증명서에 담당자의 사인 날인 생략 가능 여부**

-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면서 발급에 대한 담당자 사인날인의 의미는 '원본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위 • 변조가 아님'에 대한 발급 담당자의 「확인」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므로 사인 날인 절차는 인감증명발급절차 중 생략할 수 없는 중요한 요건입니다.

#### **카. 신분증 제출 없이 본인확인시스템만으로 신분확인 가능 여부**

- 본인확인시스템(증 진위확인시스템)은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에 의한 본인확인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보조적으로 신분확인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신분증의 제출행위 자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인감증명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제13조제4항)

#### **타. 사망 전 작성한 위임장으로 사망 후 발급된 인감증명서의 효력**

- 사망자로부터 위임받은 대리권은 사망과 동시에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사망자를 대리하여 인감증명서의 발급신청을 하는 행위는 무권대리로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다만, 인감증명서 발급행위와 인감증명서 발급신청행위는 구별되어야 할 것입니다. 증명서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발급되었고 그 과정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다면 증명자체는 유효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 따라서, 사망한 자의 위임장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법률행위를 할 경우는 위임자의 사망으로 대리권이 소멸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며, 인감증명서 자체의 효력과 관계된 것은 아닙니다.(내무부 지도 01250-11269, '89.12.23)

#### **파. 부동산 매도용일 경우 매수자가 2인 이상일 때 기재요령**

-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발급 신청시에는 매수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토록 되어 있는 바,

- 매수자가 1인 이상일 경우에는 매수자의 인적사항란에 대표자 1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하되 성명란에는“○○○외 ○명”으로 기재하고, 그 외의 매수자 인적사항은 별지 서식으로 첨부하여 직인으로 간인 후 발급합니다.
- 별지 매수자 인적사항란에 여백이 있을 경우에는 “이하여백”으로 표시하고, 인감증명발급대장에는 인감증명서에 기재된 매수자의 인적 사항을 전원 기재합니다.

#### 하. 한정치산자·금치산자인줄 모르고 인감증명을 발급한 경우

- 한정치산, 금치산의 법원 선고 후, 선고사항의 통보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인감증명이 발급된 경우, 증명발급의 효력은 선고일로 소급하여 무효가 되나, 증명청에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적인 책임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증명청이 선고사항의 통보를 받았으나 후견인 취임개시 전, 가족관계등록부 미정리 등의 사유로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에게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인감증명이 발급된 경우, 행정기관으로서는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기재해야할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적으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 거. 외국인등록자 또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가 출국한 경우 인감의 서면신고 및 대리발급 처리방법

- 출국한 국내거소신고자 등의 신고와 동시에 발급시에는 서면신고서와 위임장에 각각 본국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오거나, 본국 관공서에서 본인의 위임에 대하여 확인을 받아 제출하는 경우 발급할 수 있습니다.

#### **너. 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인에 대한 인감증명발급 여부**

- 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인의 경우 반드시 체류기간의 경신을 받은 다음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처리하시기 바람.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체류자격 재심사 후 연장허가를 출입국전산시스템으로만 처리하므로 전산자료가 경신되지 않았다면 연장허가를 받지 못한 자로 처리하여 증명의 발급을 중지하시기 바라며, 인감의 특징란에 체류기간의 만료자로서 인감증명발급중지를 기록하여 타 증명청에서 발급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더.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의 시민권 취득시 재외국민 인감증명발급 여부**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상태로서(대한민국 여권과 가족관계등록부에 상실처리가 안 된 자임) 시민권을 취득한 인감신고인이 신분증으로 대한민국 여권을 제시하고 재외국민 인감증명발급을 신청한 경우
- 시민권을 취득하였음을 인지한 이상, 출입국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외국인인지, 국내거소신고자인지, 내국인인지 국적이 확인이 가능하므로 출입국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항이고, 가족관계등록부는 신고에 의해 정리되므로 반드시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라 처리해야 할 사항은 아닙니다.

## **XIX. 인감의 보호(해제)신청 및 열람제한 등**

### **1. 본인이 인감변경신고 사항에 대하여 사실확인을 요청할 경우 확인 가능 여부**

- 인감을 신고한 본인에게 인감대장 또는 인감에 관한 서류를 열람시킬 수 있으며, 일부 민원인의 경우 민사소송 등의 관련증거물로 제시하기 위하여 본인의 인감대장 사본이나 인감증명관련 사실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며, 이 경우 본인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감대장 사본을 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주민07000-193, '96.3.19)

### **2. 국세공무원의 인감대장 열람 가능 여부**

-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8조에 의하면 법령에 의하여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 또는 인감을 신고한 본인 이외의 자에게는 인감대장 또는 인감에 관한 서류를 열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국세업무와 관련한 국세공무원의 인감대장 및 인감관련 서류의 열람은 법령상 규정된 권한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소속 신분증과 소속 기관장의 협조문을 지참하고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제한적으로 열람이 가능합니다.

### **3. 사망한 부모의 인감증명관련 서류에 대한 상속인의 열람 권한 여부**

- 인감에 관한 서류를 열람할 수 있는 자는 본인이나 법령상 권한이 있는 자입니다.(영 제18조). 다만, 인감증명에 관한 서류가 민사재판 등 쟁송관계의 중요한 자료가 될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쟁송관련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고 열람할 수 있습니다.(주민 07000-33, '96.3.19)

#### 4. 인감담당공무원의 ‘인감대조필’ 등 확인 가능 여부

-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1,000명 이상 주민의 인감증명서 징구 대신 증명청 인감담당자의 인감대조필 확인 등에 의한 간접 열람은 불가합니다. 인감대장에 대한 열람권한은 신고인 개인에게 있는 것이지 증명청의 담당자에게는 권한 외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 5. 전화로 인감증명 발급여부를 확인요청 하는 경우

- 전화로 인감증명 발급여부를 확인 요청할 경우 현행 인감증명법령상 불가하며,
  - 인감증명을 제출받은 자는 발급사실을 인터넷 전자민원 G4C 부가서비스 인감증명발급 사실확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6. 인감증명 위임장의 사본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 사본교부는 그 자체가 사실증명원으로서 효력을 가짐으로 본인과 법률상 권한 있는 자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당해 인감과 직접 관련된 사건 등으로 인하여 쟁송을 통하여 자신의 이익을 구하고자 하는 경우, 사건접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증명청의 담당자가 제출받아 확인을 한 후, 제한적으로 복사하여 줄 수 있습니다.

#### 7. 수사기관이 계약사기 관련 인영 확인을 위한 인감대장 요청시 사본 교부

- 수사기관에 본인의 이익을 구하기 위하여 고소를 하였고, 이에 따라 경찰청 등 수사기관에서 공문의 형식으로 열람의 담당자를 지정하여 인감대장의 사본을 요청한 경우는 법률상 권한 있는 자에 해당되므로 사본교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8. 인감대장의 사진촬영도 열람의 범주에 해당되는지 여부

- 원본과 동일하다는 확인이 없는 민원인의 사진촬영 자료는 그 실익이 극히 제한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문서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면 법원 등 소청기관으로 하여금 ‘서증’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사실축탁 확인 등의 방법으로 안내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9. 수사기관의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사실조회 및 열람대행 요청 처리요령

- 수사기관에서 불특정다수인의 사실조회 및 열람을 증명청에서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회신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은 증명청 권한 외의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사항입니다. 법령상 권한 있는 자의 위치에 있는 수사기관일지라도 열람의 주체는 수사기관이지 증명청이 아니며, 인감신고자 개개인의 인감증명 관련서류를 증명청에서 열람할 권한은 없습니다.

## 10. 특별대리인<sup>8)</sup>의 인감관련 서류의 열람 가능 여부

- 특별대리인은 당해 소송사건에 관한 후견인의 지위를 갖습니다. 그러므로 당해사건과 관련된 인감관련 서류의 열람에 대한 권한이 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다만, 인감신고 또는 대리발급의 법정후견인 자격은 없습니다.

## 11.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인감대장을 압수하고자 하는 경우

- 수사관련 내용이 인감사건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면 당연히 거부해야 하겠지만, 압수수색 영장을 소지하고 오는 경찰이나 검찰의 경우에는 모

---

8) 특별대리인 :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려는 자가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법정대리인이 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소송의 지연 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볼 염려가 있다는 사유를 소명하여 그 소송을 수행할 특별대리인을 선임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하고, 법원에서 이를 검토하여 허가하는 권리구제 제도임.(민사소송법 제62조)

든 공부를 원본으로 제공하여도 무방하겠습니다. 다만, 언제까지 공부를 돌려 줄 것인가 하는 ‘기한’은 반드시 정확히 파악하여 관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 12. 외국으로 입양된 자의 인감관련 처리방법

- 우리나라 국적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해 그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에 이미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시민권자입니다.
- 그러므로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를 하거나 둘 중 하나의 신분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등록을 하고 그 신분증을 발급받은 후 그를 근거로 체류지(거소지) 관할 시·구·읍·면에 인감의 신규신고를 한 후 인감증명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13. 미성년자가 혼인신고를 했을 경우 인감신고 가능 여부

- 미성년자가 혼인신고를 하였을 경우에는 성년으로 의제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민법(제826조의2)을 인감증명법에서도 그대로 준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그 분은 미성년자가 아닙니다. 이혼을 하더라도 계속 성인으로 의제 됩니다.

## 14. 군인의 인감증명 대리발급시 신분증이 없는 경우 처리방법

- 군인의 경우 소속 부대장의 확인을 받은 현역복무확인서를 제출받아 신분증 확인으로 갈음처리하고, 신청인은 본인, 사용용도는 ‘인감대리신청 신분 확인용’으로 발급받아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